

농지관리기금 운용실적보고서

제2권 종합평가부문

2000. 4

농 립 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농지관리기금운용실적보고서

(종합평가)

총괄책임자 : 농림부/농지과장 나승렬
 작성책임자 : 각 지표별 책임자 참조
 연락처 : 농림부/농지과(☎02-503-7265)
 농업기반공사/기금관리처(☎0343-420-3581)

차 례

1. 1 기금의 필요성	1
<input type="checkbox"/> 지표관리방향	3
<input type="checkbox"/> '95~'99 추진실적 요약	5
<input type="checkbox"/> 평가 내용별 추진 실적	7
1. 2 기금의 안정성	27
<input type="checkbox"/> 지표관리방향	29
<input type="checkbox"/> '95~'99 추진실적 요약	31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평가 내용별 추진 실적	33
1. 3 기금의 경영개선 노력	57
<input type="checkbox"/> 지표관리방향	59
<input type="checkbox"/> '95~'99 추진실적 요약	61
<input type="checkbox"/> 평가 내용별 추진 실적	64

지표명

1.1 기금의 필요성

가중치

8점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강상구 (☎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관리기금부 2급 전철원 (☎0343-420-3581)



평가내용

1. 기금의 환경 적응성

- 가. 정부정책과 기금 운용계획의 연계성
- 나. 정책목표 달성의 기여도 및 타 정책에 대한 파급효과
- 다. 정책 환경변화와 기금 유지의 필요성

2. 기금형태 유지의 적합성 및 기금의 차별성

- 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보다 기금형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불가피성
- 나. 농지관리기금 기능의 차별적 필요성(정부예산, 타 기금 또는 타 단체의 유사기능 및 사업 대비)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 여건

- UR 협상과 WTO 출범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
 - OECD 가입('96), ○ 일본의 쌀시장 개방('99)
 - 2004년도 쌀시장 개방 재협상시 개도국 지위 상실 우려 및 쌀시장 개방 압력 가중

- 정부의 예산회계와 농지관리기금의 차별화 요구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99)
 -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요구
 - 기금정책심의회 설치 및 기금운용평가단 운영
 - 기금회계의 전산화 및 운용실적 점검 강화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99)
 -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조달 및 용도 명시

2. 지표관리 방향

- 정책 환경변화에 농지관리기금 운용의 능동적 대처
 - 쌀의 국제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및 제도 운영
 - 농지감소 추세에 대응한 대체농지조성사업의 지속적 확보 방안 강구

- 농업정책에 대한 기금운용의 목적 달성과 그 파급효과
 - 정부의 농지정책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달성
 -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농지관리기금 용자·투자·보조사업에 대한 달성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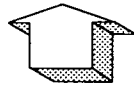
- 농지관리기금의 타 예산과의 차별적 필요성
 - 경직된 타 예산에 비해 비교적 탄력적 기금운용으로의 효과분석
 - 국민경제 전략부문에서 외부경제 효과가 높은 부문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으로 자원배분의 효과 달성
 -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영농규모화사업의 상환원리금 재투자 관리

3. 지표관리 체계도

◇ 목 표 ◇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준치 필요성 및 차별성 부각



정부의 농업정책과 연계한 기금운용

- 정부정책과 기금운용의 연계
- 정책변화와 기금의 유지
- 기금형태 유지의 차별화

농업정책과 운영계획의 연계	정책 목표 달성에 의한 타 정책 파급	정책변화에 따른 기금 유지	농지관리기금의 차별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금사업의 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조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WTO 재협상에 대비 ◆ 쌀산업의 육성으로 쌀 자급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목적에 위해 특정자금 운용 ◆ 집행과정의 합목적성 및 탄력적 운영

II. '95~'99까지 추진실적 요약

1. 기금의 환경 적응성

□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연계 추진

농업정책의 변화		농지관리기금사업의 변화
○ 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4) - 농어촌구조개선(영농규모화사업) 추진을 위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	○ 농지관리기금설치('90. 7) - 농지관리계정 및 농지 조성계정 구분 설치
○ 농어촌구조개선대책('91. 7) - 42조 투자계획('92~2001)수립 · 영농규모화사업 : 5조원 · 농업생산기반정비 : 9조4천억원 ※'94년에 3년간 앞당겨 '98까지 42조 투자 계획을 집행키로 결정	⇒	○ 농지전용부담금징수('92) -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계정) 병행 실시
○ UR협상 타결('93. 12) - 쌀 「개도국 유지」 인정받아 10년간 관세화 조치(2004년 재협상) - MMA(최소시장접근) : '95년 1% → '99년 2% → 2004년 4%(20만5천톤)		
○ 쌀산업발전 종합대책('96. 6) - 2004까지 쌀전업농(5~20ha규모) 10만호, 법인경영체(50~100ha) 2000개소 육성	⇒	○ 쌀전업농 육성계획수정('96) - 영농규모화사업예산확대 · '95년 2,800억원→'96년 3,365억원→'97년 3,484억원
○ 45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98. 10) - '99 ~ 2004까지 농업부문 45조 · 영농규모화사업 연평균 3,500억원 수준	⇒	○ 영농규모화사업방식 전환 - 소유개념에서 이용개념 - 경자유전에서 농업경영 규모 확대

□ 농업정책의 변화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사업의 기여 효과

- 농어촌구조개선 실현으로 농가 경영규모의 확대
 - 영농규모화사업
 - 쌀 전업농 : (지원전) 2.12ha → (지원후) 3.47ha(1.6배)
 - '92~'98까지 22,524억원 투입 60,607ha 유동화 실현
 - <경제적 측면>
 - 쌀전업농의 규모확대로 생산비 5.2% 절감
 - 지원농지의 82%가 기존농지와 집단화로 농업경영 효율성 제고
 - <정책효과 측면>
 - 농정방향과 일치, 정책목표의 적합성, 정책집행기관의 적합성, 정책선호도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서남해안 간척·대단위농업개발등 농지조성사업의 효과

<직접효과>

- 국토확장 및 농경지 확대로 토지 창출 : 총 74천ha 조성
- 기계화 영농과 우량농지 확보로 농가 소득향상 및 항구적인 식량자급기반 구축에 이바지

<간접효과>

- 담수화에 의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 수자원 확보로 물부족 사태에 적극 대처
- 수해상습지 해소, 육운개선 및 고용증대 효과 등

2. 기금형태 유지의 적합성 및 기금의 차별성

□ 농지관리기금사업의 기금형태 유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농지관리계정>

-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 영농규모화사업은 장기간(20년)에 걸친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맞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기금형태 유지가 불가피함.
 - 안정적 재원확보로 농업인들의 중장기적인 영농규모사업 계획수립 가능
- 정부출연금, 재특차입금 이외에 고금리의 국채관리기금 활용 또는 농업인들의 융자상환원리금 재투자등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재원의 운용관리 필요

<농지조성계정>

- 농지잠식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의 확보
 - 사업목적과 사업비 재원이 『기금』 형태로 함이 타당
 - 법률상 농지조성비는 부과 목적외 사용 불가(법정부담금)

□ 타 예산과 다른 농지관리기금만의 특징(차별성)

- 영농규모사업 목표량 달성에 따른 일반회계 규모확대 억제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해 특정자금(융자상환금 재투자)의 운용 필요
- 농지전용에 따라 준조세 성격의 농지조성비를 징수하여 대체농지 조성사업에 활용

□ 농지관리기금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영농규모화사업을 기금으로 시행하여 정부의 45조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
-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의 필요
 - 식량안보 차원의 농지조성에 농지관리기금이 절대적 영향
- 정부예산과 달리 매년 상환원리금을 재투자하는 생산적 자금임.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기금의 환경 적응성
-------------	----------------------

1. 정부 정책과 기금운용계획(예산)의 연계성

가.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배경

- '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하여 '93년 종결된 UR협상과 '95년 WTO 공식 출범에 따른 국내외 경제·사회여건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도입
-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86년 농외소득증대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종합대책」에서 나타남
- '89년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농어촌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비전 제시
-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따른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90년 농지관리기금 설치
 - '81년부터 설치 운영되던 농지기금을 농지조성계정으로 하고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관리계정 신설

나. 농업정책변화에 연계된 농지관리기금 운영

농업정책의 변화		농지관리기금 및 시행사업의 변화	
○농지개혁법 제정 ('49년)	○농지개혁으로 자작농 체제구축 - 소작농지 및 3ha 초과 농지 정부매수, 자작농가에 분배(자작비율 92%)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72년)	○농지의 타목적 사용시 농지전용 허가제도 도입 ○우량농지를 절대농지로 지정 타목적 사용 제한 ('75년) ○논 및 경사도 15%이하의 밭에 대해 다년생 식물 재배금지('75년)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제도 실시	○전용대상 농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간척,개간)에 의하여 시행된 농지개발사업의 몽리지인 경우 당해 농지를 전용하는자에게 부과기준을 정하여 공공투자 비용 부담근거 설정(보전법 제정)

농업정책의 변화		농지관리기금 및 시행사업의 변화	
○농지보전법 개정 ('81. 3)	○대체농지조성비 징수 및 농지조성사업 추진	○농지기금 설치 ('81. 3) ○농지조성사업착수 ('83) ○대단위농지조성사업지구 기금투자 착수('83)	○ 대체농지조성비 징수 - 농지전용자는 전용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용을 납부 ○ 소포(진도군),대백(김포시)지구사업 착수 ○ 새만금지구에 농지조성기금 투자
○농어촌종합대책 ('86. 3)	○ 영농규모확대를 위한 농지구입자금지원 근거 마련 『농어촌개발기금』 설치 →농지구입자금지원약속 ('88~'93 : 2조원)	○농지구묘화사업 착수 ('88)	○농지구입자금 용자지원 사업시작
○UR 협상 착수 ('86. 9)	○우루과이 폰타델에스터에서 협상 시작 ('94. 4월 종료)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89. 4)	○농어촌구조개선(영농규모 확대) 촉진을 위해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농지관리기금설치 ('90. 7)	○농지관리계정 -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중 농지구입자금관련 채권·채무 인수 ○농지조성계정 - 농지기금 흡수
○농어촌구조개선대책 ('91. 7)	○농업개방화 추세의 진전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을 가속화 - 42조 투자계획 ('92~2001)수립 - 영농규모화사업 : 5조원 - 농업생산기반정비 : 9조 4천억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92)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 수납업무를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계정)에서 병행 시행

농업정책의 변화		농지관리기금 및 시행사업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협상 타결 ('9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의 경우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아 관세화 조치 10년간(2004년도 재협상)유예 ○ MMA(최소시장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 '95년 1% (5만 1천톤) → '99년 2% → 2004년 4% (20만 5천톤) <2004년 쌀시장개방 재협상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입장이던 일본이 '99부터 쌀수입을 전면개방한 점과 '96부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점등을 감안할 때 현행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방안추진 ('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사업을 선택, 정부가 지원한 「농업인자율추진방식」 도입 ○ WTO 대응, 영농규모화 사업지원 대상자를 쌀전업농으로 한정 ○ 42조 투자계획('92~2001)을 '98까지 조기 집행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 육성계획 수립추진 ('9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 육성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 10만명 - 비재배면적 : 42만ha (전체비재배면적의 46%) - '99까지 선정인원: 71천명 · 농지규모확대 지원 35천명 · 농기계지원 : 17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산업발전 종합대책 ('9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까지 쌀전업농 (5~20ha규모) 6만호 법인경영체(50~100ha) 2,000개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전업농 육성계획 수정('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목표 10만호→6만호 (평균면적 8ha 규모) ○ 영농규모화사업 예산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 2,800억원→'96년 3,365억원→'97년 3,48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농 중심의 쌀전업농 육성정책 조정('9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조정(6만호→10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업농(5ha규모) 6만호 - 가족전업농(3ha규모) 6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 육성계획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조정 : 6만호 → 10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ha 일반전업농 : 6만호 - 3ha 가족전업농 : 4만호 ○ 자력확대농가 우선지원 ○ 지원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야 10ha, 중산간지 7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투융자 실천계획 ('9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2004년까지 농업부문 45조 투융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영농규모화사업 3,5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화 사업방식 소유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자유전실현정책에서 농업경영규모확대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 방식인 임대차사업 활성화

다. 정부의 농지정책과 연계된 자금운용

□ 주곡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 보전 정책

- 주곡 자급기반의 원천인 농지는 경작하는 농민이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하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이 되어야 함

지역별로 농지를 보호하는 농업진흥지역제도와 필지별로 개별농지의 전용 여부를 결정하는 농지전용허가, 협의 제도로 크게 분류

- 농업진흥지역은 생산성이 높은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게 되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일정행위가 제한
- 농지전용허가·협의제도
 - 농지전용허가 : 일반적인 경우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농지전용협의 : 도시계획(주거·상업·공업)을 결정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인·허가 등을 할 때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야 함
 - 농지전용신고 : 농업용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전용이 가능

□ 연도별 경지면적 증감 현황

(단위 : ha, %)

구분	'93	'94	'95	'96	'97	'98	'99
○ 감소면적	25,076	31,995	63,067	51,869	32,900	25,700	39,500
○ 증가면적	9,957	9,887	15,618	12,092	10,942	12,259	28,300
- 개간	2,079	4,937	5,101	8,856	5,472	5,882	8,100
- 간척	4,995	3,505	9,014	498	3,137	3,075	700
- 기타	2,883	1,445	1,503	2,738	2,333	3,302	19,500
○ 증(△)감	△15,119	△22,108	△47,899	△39,777	△21,958	△13,441	△12,200
○ 농지면적	2,054,800	2,032,700	1,985,300	1,945,500	1,923,500	1,910,100	1,898,900
- 논	1,298,300	1,267,100	1,205,900	1,176,200	1,162,800	1,157,300	1,152,600
- 밭	756,500	765,600	779,400	769,300	760,700	752,800	746,300

※ 연 평균 감소면적 : 24,600ha

자료 : '99년도 농업기본 통계조사결과

□ 농지관리기금 농지조성계정 농지조성사업의 조달재원과
운용(용도) 현황 분석

○ 농지조성비 수납현황(조달)

(단위 : 억원)

계	'93까지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18,954	8,078	1,451	1,975	2,005	2,609	1,087	1,749

○ 농지조성사업 투자현황(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구수	개발면적(ha)	총 사업비	'99까지	2000계획
계	53	73,993	3,050,499	1,959,238	188,619
준공지구	36	13,865	428,250	428,250	-
서남해안간척	33	4,979	284,217	284,217	-
대단위종합	2	8,846	141,338	141,338	-
유휴지개발	1	40	2,695	2,695	-
시행중	17	60,128	2,622,249	1,530,988	188,619
서남해안간척	12	19,054	2,096,059	1,098,590	108,000
대단위종합	3	40,800	504,832	429,332	75,500
유휴지개발	2	274	21,358	3,066	5,119

□ 기대효과

- 농지관리기금 조성계정은 매년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 확보하는데 기여
- 매년 2000억원 이상의 농지조성비를 서남해안간척 및 대단위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국토의 확장 및 잠식농지 보전에 기여
- 전용농지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여 농지전용 억제효과에 기여

라.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연계된 농지관리기금운용

-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이 4.5%를 점하여 구조개선사업 중 영농규모확대사업에 중심 역할을 수행

(단위 : 억원)

구 분	'92~'97		'98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증감
○ 42조 계획(A)	275,887	268,799	66,614	65,177	342,501	333,976	△8,525
-정부예산	230,890	226,508	55,110	54,878	286,000	281,386	△4,614
-공공기금	18,402	17,372	6,340	5,497	24,742	22,869	△1,873
-기 타	26,595	24,919	5,164	4,802	31,759	29,721	△2,038
○ 농지관리기금(B)	10,369	10,828	4,458	4,318	14,827	15,146	319
농지관리기금점유비 (B/A)	3.8%	4.0%	6.1%	6.6%	4.3%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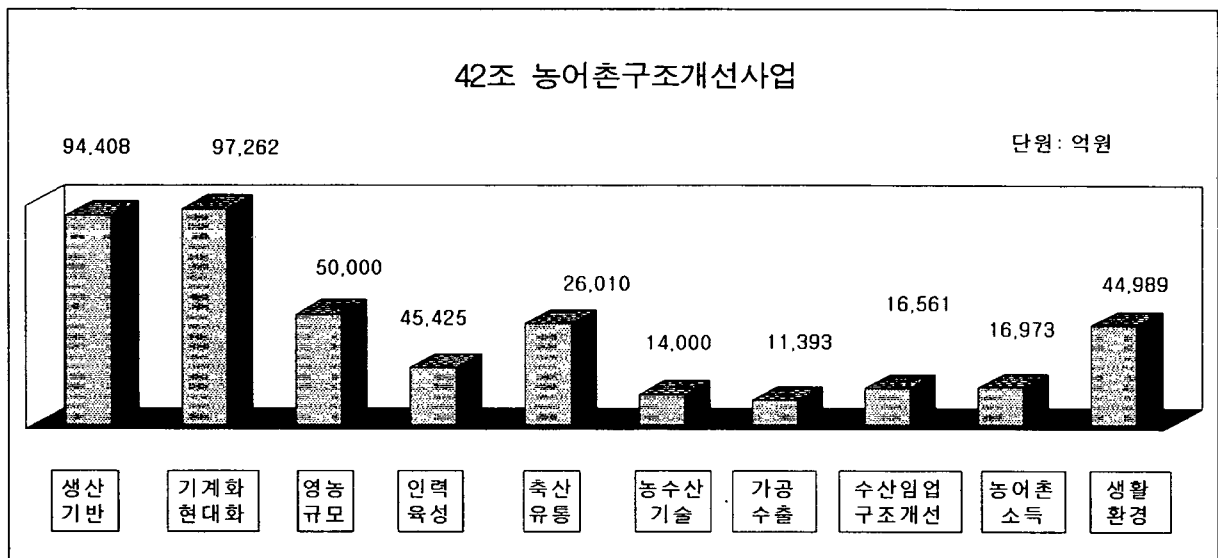
2. 정책목표 달성기여도 및 타 정책에 대한 파급 효과

가. 정부의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 정책방향

'91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마련 영농규모확대 촉진, 농업생산기반조성, 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 농어가의 소득향상기반 확충, 농촌의 쾌적한 생활·문화 공간 창출을 목표로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착수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분야별 투자규모('92~'98)



나.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 주요성과

□ 농업구조개선 효과

-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영농의 규모화, 농업기계화, 전문화 등 농업구조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

- 경지정리율 : ('92) 67 → ('98) 85%(778천ha)
- 배수개선율 : ('92) 29 → ('98) 41%(84천ha)
- 벼농사기계화율 : ('92) 88 → ('98) 97%
- 영농규모화(쌀전업농) : (지원전) 2.12 → (지원후) 3.47ha(1.6배)
- 경지 3ha이상 농가 : ('92) 52 → ('98) 66천호(1.3배)
- 한우 50두 이상 농가 : ('92) 1,190 → ('98) 5,015호(4.2배)
- 양돈 1천두 이상 농가 : ('92) 527 → ('98) 1,932호(3.7배)
- 시설현대화 온실면적 : ('92) 263 → ('98) 2,561ha(9.7배)

□ 농가의 소득구조개선 효과

- 농업부문 부가가치 성장률이 타 산업 성장률에 근접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농업경제 지표상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구 분	('86~'89)	('90~'93)	('94~'97)
○ 농림어업 부가가치 성장률 (산업전체 부가가치 성장률)	0.40% (10.4%)	2.50 % (6.80%)	4.80% (5.00%)
○ 농림어업 1인당 노동생산성 (산업전체1인당 노동생산성)	2.16% (6.58%)	7.05 % (4.56%)	11.11% (2.91%)

다. 농지관리기금사업의 기여도

□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성과

〈영농규모화사업 투융자 현황〉

- '92년 이래 '98까지 42조 투융자계획중 영농규모화사업으로 투입된 총사업비 22,524억원으로 60,607ha 유동화

(단위: 억원)

구 분	투융자 계획		실 적		성 과 율 (%)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	65,525ha	25,326	60,607ha	22,524	92.5	88.9
○ 농 지 매 매	34,077ha	18,300	35,149ha	18,399	103.2	100.5
○ 농 지 임 대 차	25,744ha	6,530	24,388ha	3,828	94.6	58.6
○ 농 지 교 환 분 합	5,704ha	526	1,070ha	297	18.8	56.5

주: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제외

자료: 농림부 1999. 농어촌구조개선사업추진실적·성과 및 개선과제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성과 분석〉

경제적 측면

- 수해 쌀전업농의 규모확대에 따른 쌀생산비 5.2% 절감
- 쌀전업농 호당 평균소득 약 1천만원 증가
- 수해 쌀전업농의 81%가 50세 미만으로 청장년화
- 지원농지의 82%가 기존 농지와 집단화 됨에 따른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정책효과측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규천 박사외 1명)의 연구결과('99)

[사업수혜농민, 도시근로자 등 각계 각층 총 208명 설문분석]

- 정책성공요인(75% 이상) 주요 기여지표
 - 농정방향과의 일치성 82.2%, 정책목표의 적합성 83.2%, 정책집행기관의 적합성 81.3%, 정책선호도 90.4%, 소득향상효과 인식 77.9%

종합평가결과

- 한국농촌경제원의 분석에 의하면 농지규모화사업 정책 자체가 가지는 사업 목표 달성도, 소득효과, 정책에 대한 선호도, 생산비 감소효과 등 농어촌구조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쌀전업농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농업인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평가

□ 서남해안 간척 등 농지조성사업 추진효과

〈대체농지조성사업의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각종 개발정책의 추진으로 산업용지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켜 기존 우량농지의 전용이 가속화 되었으며,
- 정부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르는 우량농지의 잠식에 대처하여 식량 자급확보라는 차원에서 간척개발 등 대체농지조성사업을 추진

〈대체농지조성사업의 추진효과〉

직접적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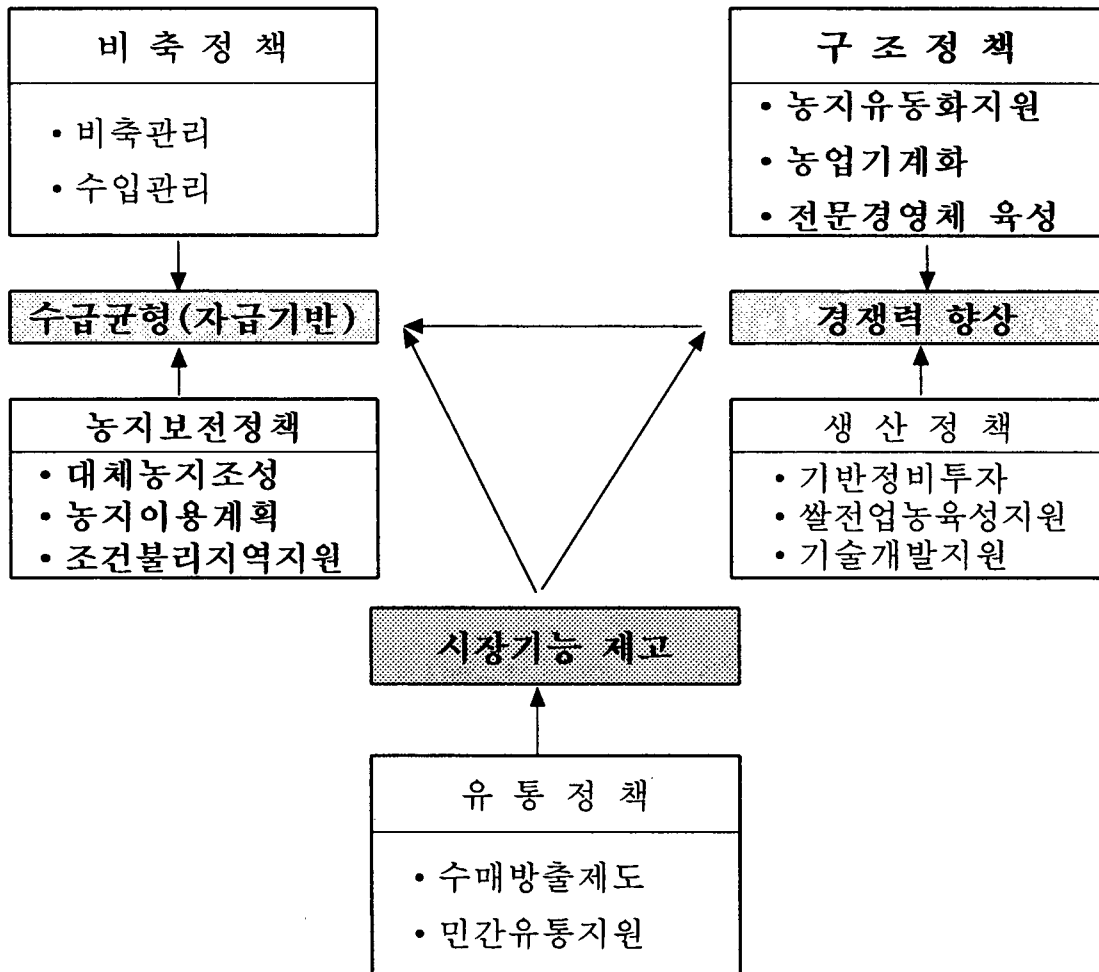
- 서남해안 간척사업은 바다를 육지화 하여 국토를 확장하는 입지조성과 그것을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토지창출에 기여
 - 농지관리기금으로 총 74천ha (준공 14천ha, 시행중 60ha) 농지를 조성
- 간척으로 대형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경작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창출 및 식량자급에 기여

간접효과 측면

- 간척사업으로 방조제를 체절함으로써 토지가 확보되는 동시에 각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담수호가 창출되어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 물부족 사태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음
- 기타 육운개선효과, 국토방위비 절감효과, 관광객 유치효과 뿐만 아니라 조류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의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염해방지 및 배수개선을 통한 단위생산성을 높이고 한해를 극복하는데 기여

3. 정책환경변화와 농지관리기금 유지의 필요성

가. 쌀산업정책 체계도



나. 2004년 쌀시장개방 재협상을 앞둔 우리 쌀산업의 현주소

□ 쌀 가격

우리나라 쌀값 : 미국의 4.3배, 태국의 5.9배

○ 쌀 국제가격 비교

연도	생산자 가격(80kg)			미국중립종	태국장립종	비교	
	정곡중품	수매가격 (1등정곡)	정곡수매 가격(A)	정곡가격 FOB(B)	정곡가격 FOB(C)	A/B	A/C
	80kg/원	80kg/원	\$/톤	\$/톤	\$/톤		
'90	95,156	111,140	1,962	335	326	5.86배	6.01배
'91	97,291	119,210	2,031	379	350	5.36배	5.80배
'92	99,682	126,360	2,023	402	323	5.03배	6.26배
'93	102,072	132,680	2,066	394	318	5.24배	6.50배
'94	107,308	132,680	2,064	499	422	4.13배	4.89배
'95	114,430	132,680	2,151	416	373	5.14배	5.77배
'96	136,688	137,990	2,143	468	416	4.58배	5.15배
'97	141,916	137,990	1,814	421	306	4.31배	5.93배

자료 : 1) 농림부 주요통계, 1999

2) 미국 : US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태국 : 장립종 1등급

□ 쌀 생산비

○ 한국의 쌀생산비 : 미국의 3.3배

○ '94년도 한국과 미국의 10a당 쌀생산비 비교

(단위 : 원, %)

구분	계	토지 용역비	노력비	영농시설 및농구비	종묘·비료 ·농약비	자본 용역비	기타
한국(A)	400,502	161,489	110,893	59,889	37,506	22,259	8,466
미국(B)	120,467	18,571	20,681	17,099	26,250	5,788	32,075
A/B	332.5	869.6	536.2	350.2	142.9	384.6	26.4

자료 : 한국 농림수산부, 농산물생산비 조사결과 보고, 1994

미국 USDA, Costs of Production, 1994

□ UR 농산물 협상과 쌀

- '93. 12월 타결된 UR 농산물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쌀은 개도국의 지위 인정
 -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 최소시장 접근(MMA) 물량도 10년간('95~2004) 1%~4%임.
- 그러나, 우리나라가 '96년도에 OECD가입과 일본이 '99년도에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 점 등을 감안할때 쌀 시장개방 차기협상(2004년도)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됨.
- 한두봉교수의 「WTO차기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기협상에서 쌀을 관세화할 경우 2010년도에는 쌀 자급율이 76%까지 떨어질 것이고, 관세화 대신 MMA만을 4%에서 8%로 늘릴 경우 쌀 자급율은 90%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
- 쌀시장 개방에 따른 자급율 감소 → 쌀의 국제시장가격 인상(폭등) → 국민안보(식량무기화) 및 국가경제발전의 장애요소

다. 농지소요면적 추정

구분	농림부 (98. 4)	농촌경제연구원 (98. 9)	국도연구원 (99. 5)	농촌경제연구원 (99.12)
목표년도	2004년(7년간)	2007(10년간)	2028(30년간)	2010(10년간)
전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100%자급 ◦ 쌀생산량 3,070만석 - 단수:480kg/1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100% 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량자급도60% (현수준) 및 쌀 자급율90% - 국내인구최고점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자급율 - '98 : 100% - 2004 : 96% - 2010 : 96% ◦ 1인당 쌀소비량 - '98 : 99.2kg - 2004 : 89.9kg - 2010 : 79.6kg
소요농지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0천ha - 논 1,100천ha - 밭 700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32천ha ('96현재수입곡물 전량을국내생산 가정시소요식부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00천ha - 논 1,120천ha - 밭 580천ha 	
농지면적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28천ha - 논 1,000천ha - 밭 728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76천ha - 논 977천ha - 밭 699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0천ha - 논 640천ha - 밭 210천ha (농산물시장개방되고농지보전시책 없을 경우 가정) 	(최악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1,910천ha -논 1,059천ha ◦ 2004 :1,777천ha -논 969천ha ◦ 2010 :1,655천ha -논 859천ha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천ha - 논 △100천ha - 밭 28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08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0천ha - 논 △480천ha - 밭 △370천ha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2000. 3) 『한국의 농지제도 및 규제』

라. 쌀산업 육성정책 및 기금유지의 필요성

□ 농가의 경영규모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 농가당 논면적이 0.8ha로 영세한 우리농업의 현실에서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이 필수적임
- 농업내부 자본축적의 부족으로 농가경제잉여금이 적어 자력확대가 어려우므로 장기저리인 영농규모화 자금 지원을 통한 규모확대 추진 필요
 - 농가경제잉여 : ('95) 6,299천원 → ('98) 3,506천원

□ 쌀생산감소에 대응한 자금기반 조속 마련

- 매년 쌀재배 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수입 개방시에는 한국농업의 대중을 이루는 쌀산업의 사양화 예상
 - 쌀재배면적 : ('90) 1,244천ha → ('98) 1,059천ha
 - 쌀 생산량 : ('90) 5,606천톤 → ('98) 5,097천톤
-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 이후 규모화된 쌀전업농이 쌀자급에 기여토록 대비
 - 세계곡물수급은 인구증가, 기상이변으로 부족상태가 심화될 전망이며 향후 통일시 쌀수요의 급증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

□ 전업·은퇴농가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생산적으로 이전

- 전업·은퇴농가의 농지를 쌀전업농에게 이전, 농업자본의 농외유출 방지
- 쌀전업농을 통한 우량농지보전 및 농지의 휴경화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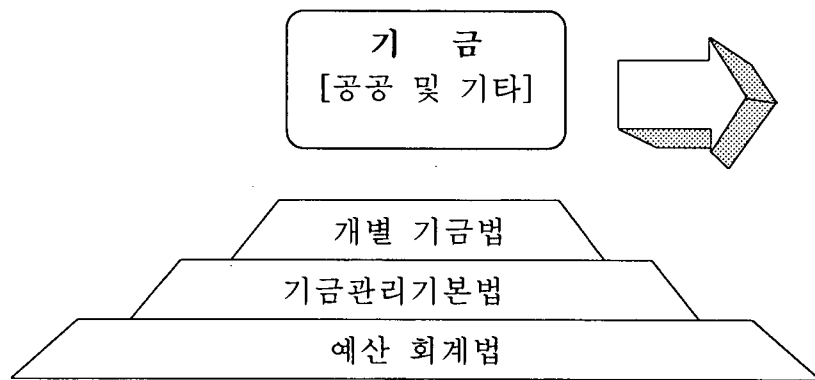
□ 농지관리기금 유지의 필요성

- 쌀시장개방과 잠식되는 농지확보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쌀자급기반 조기구축을 위한 쌀산업육성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 대체농지조성이라는 기금부담금 징수목적은 고려할 때 정부예산보다는 비교적 탄력적인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농지관리기금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1. 농지관리기금 형태 유지의 적합성과 불가피성

가. 기금의 설치근거 및 특징

□ 설치근거 :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경직된 예산제도로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특정 정책 목적사업을 수행』

□ 기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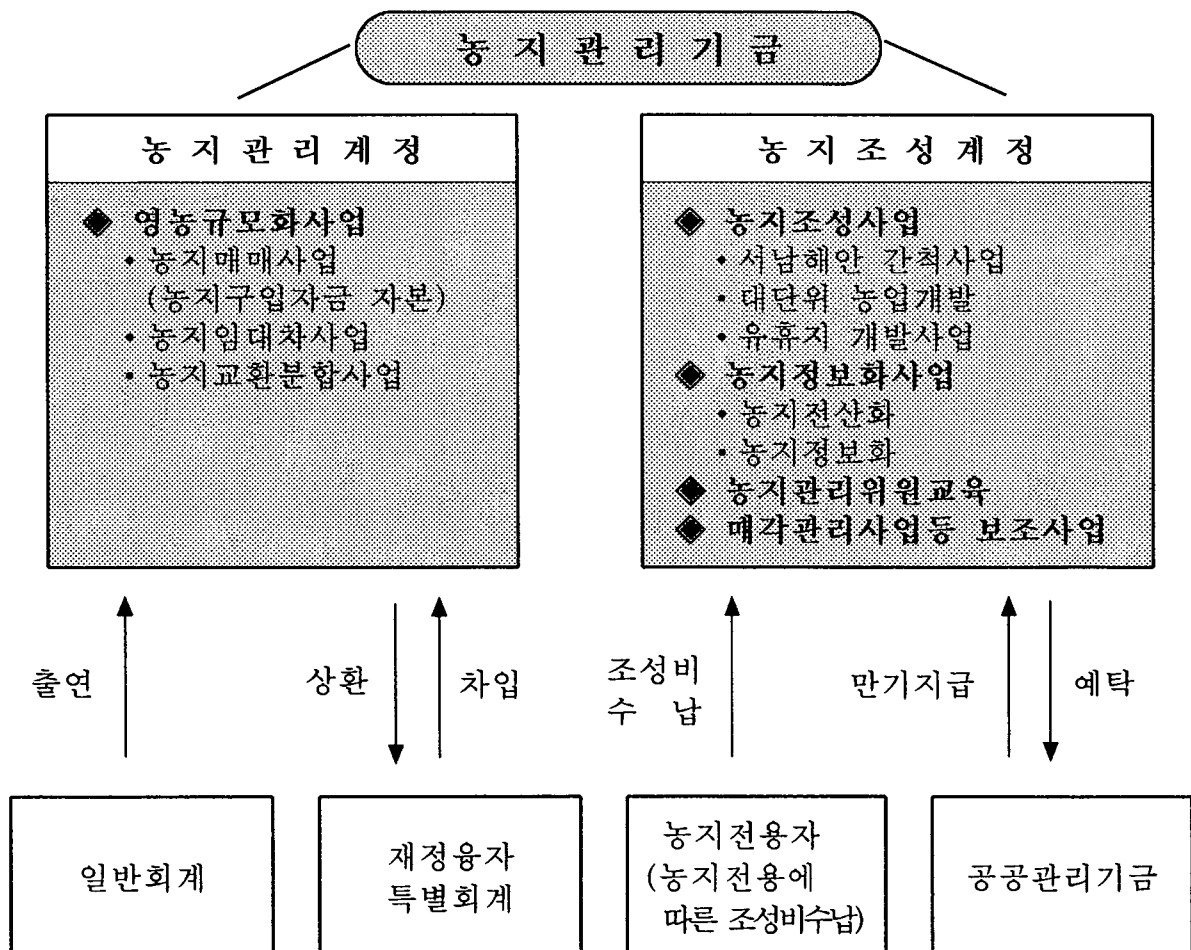
기금의 특징

- ◆ 외부경제 효과가 높거나 국민경제의 전략 부문에 정부에 의한 지원체계 확보로 경제성장에 기여
- ◆ 특정산업지원,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정부의 자원배분 가능
- ◆ 사업량이 가변적인 재정사업을 기금에 의해 신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규모확대 억제

나. 예산과 기금의 상호관계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설치사유	○ 모든 국가재정 활동	○ 특정사업의 운용 ○ 특정자금 보유 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 특정목적에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용	○ 출연금, 부담금등 다양한 수입재원을 토대로 융자사업등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지속적인 재원조달이 기능 안정적·계획적·탄력적이며 효율성 있는 운용
○ 운용계획 확정집행	○ 정부가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며, 국회가 심의 확정함 ○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	좌 동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수립 -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령 승인으로 확정후 국회보고(공공기금) ○ 집행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 수입과 지출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	좌 동

다. 농지관리기금의 예산과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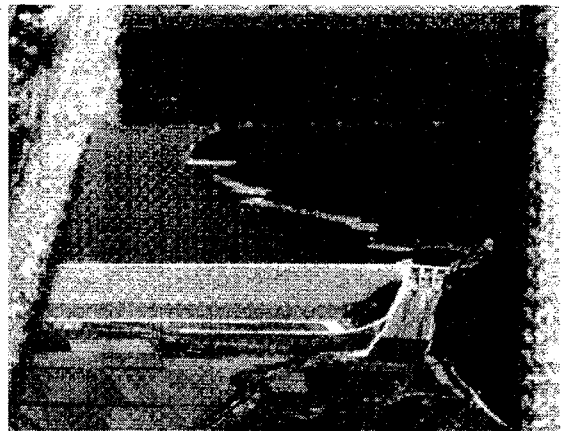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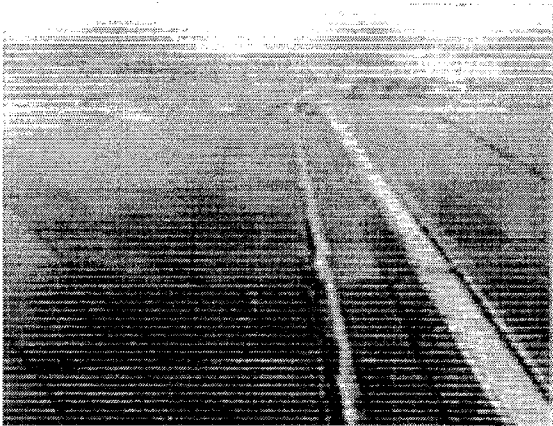


농지관리기금



↑
쌀 경쟁력 제고(영농규모화사업)

↑
농지확대(농지조성사업)



↑
농지관리계정

↑
농지조성계정

↑
농지관리기금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기금관리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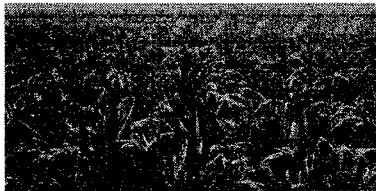
라. 농지관리기금사업의 기금형태 유지의 적합성 및 불가피성

농지관리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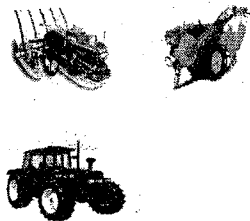
□ 영농규모화사업의 특성

- 다수 농업인을 상대로 장기간(20년)에 걸쳐 융자상환원리금을 징수하여 채투자하는 사업임
- 농업인들의 영농규모확대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이루어지므로 예산도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함
- 장기간(20년)동안 지원농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임

영농규모확대 계획



나도 5년후 대농이 될 수 있어



어느농업인의 꿈



□ 영농규모화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유

- 사업의 특성상 「기금」으로의 운용이 적합
 - 영농규모화사업은 장기간(20년)에 걸쳐 특정한 자금(융자상환 원리금의 재투자)으로 특정한 목적(영농규모화)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기금의 특성에 맞음
- 정부일반(특별)회계 예산으로 영농규모화사업을 할 경우
 - 사업예산 확보의 불안정으로 농업인들의 중장기적인 영농규모확대 계획 수립 불가
 - 국회의 세입·세출 심의과정과 정부재정(세수) 형편에 따른 예산 및 자금 확보의 불안정 → 농업인들의 계획적인 영농확대 계획수립 불가능 → 영농의욕 좌절
 - 대농업인 서비스 질 저하
 - 세출예산 배정, 자금예산 편성 및 배정, 계획변경서 추경등 절차의 경직성 때문에 농업인들의 농지수용에 대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불가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3개 기관의 통합으로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의 출범에 농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음

농지조성계정

□ 농지조성사업의 특성

- 사업목적 : 식량자급기반 유지를 위하여 농업 이외의 타용도 전용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 확보
- 재 원 : 농지조성비(농지법 제40조에 의한 민간부담금)

□ 농지관리기금 조성계정 운용·관리의 근간이 되는 농지법 입법 취지

- 농업경쟁력 제고 등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
 -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주체의 육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신규 영농주체의 육성 및 건전한 경영과 자본의 농업참여 유도

-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면적의 농지확보와 보전
 -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식량의 안정 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수행
- 농업위주의 농지활용에서 농업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활용으로 전환
 - 건전한 2, 3차 산업의 농촌 입지를 유도하여 농촌을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복합산업 공간으로 육성
 - 산업시설, 농가소득 시설 등 필요한 농지의 전용을 합리적·체계적 기준에 의하여 편리하게 허용
- 복잡한 농지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농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 제정
 - 분산된 법률 하에서 야기되고 있는 정책수행의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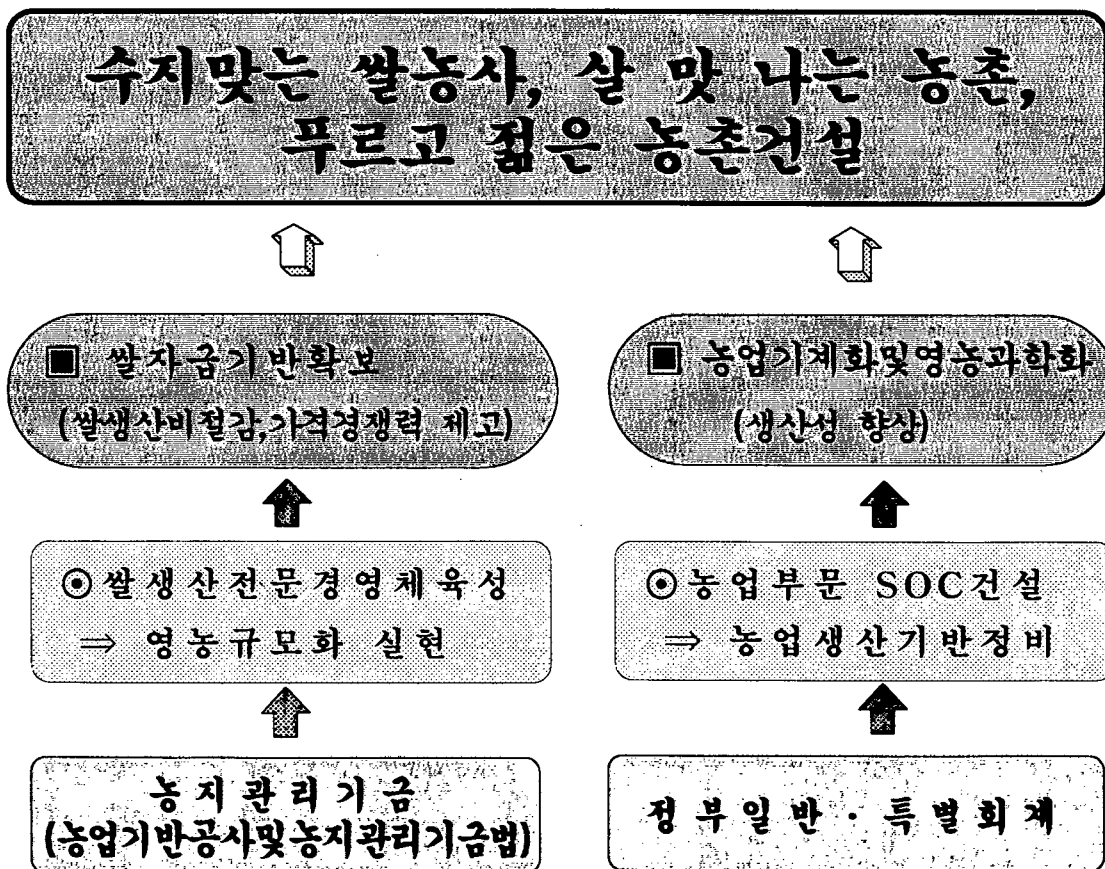
□ 대체농지조성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사유

- 사업목적과 사업비 재원이 「기금」 설치목적과 일치
 -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전용하여 타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민간부담금으로 목적세 성격을 띤 특정한 수입금임.
 - 법률상 조성비 부과목적외 사용 할 수 없음
- 농지조성비가 목적사업(대체농지조성사업)에 전액 재투자되지 못할 경우
 - 현재 진행중인 15개 간척사업 지구의 준공 차질을 포함하여 매년 감소되는 농지면적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음
- 농지조성계정은 특정 자금을 조성(농지조성비)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 (농지조성사업) 되므로 예산회계법상의 기금 설치 목적에 정확히 부합
- 농지조성계정은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농지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
- 농지조성비를 특정 목적사업(농지조성사업) 수행과 연계시키지 않고 포괄적인 목적(재특 또는 농특회계)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목적과 중복되므로 납부자들의 중복·이중부과에 따른 폐지 및 통합요구에 대응하기 곤란

2. 농지관리기금사업의 차별성

가. 영농규모화사업 차별성

- 영농규모화사업은 쌀전업농의 경영규모확대로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42조 농어촌구조개선투융자사업 중 가장 건실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음
- 향후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유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쌀전업농 10만호 육성의 차질 없는 수행과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예산(기금) 확보가 긴급
- 2000년 1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개기관을 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사업임
- 단순 회전성 투자 성격의 정부예산과 달리 영농규모화사업은 20년 주기의 매년 상환금을 재투자하는 생산적 자금임.



나. 농지조성사업의 차별성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량 증대와 이에 따른 농지면적 감소로 식량자급 기반 유지에 필요한 농지확보 정책 긴급
- 정부일반(특별)회계 예산재원의 한계로 인한 기금사업의 불가피성
- 간척농지등 대체농지조성사업 중단시
 - 1) 농지 절대면적 부족 ⇒ 농지값 상승, 쌀 생산량 감소 ⇒ 쌀 생산비 증가 ⇒ 쌀산업포기(수입의존) ⇒ 국제적 식량위기화에 속수무책 ⇒ 선진국 진입 불가
 - 2) 산업용지부족 ⇒ 공장부지 가격 상승 ⇒ 제품가격 상승 ⇒ 경쟁력 상실 ⇒ 무역적자 심화 ⇒ 국력 저하

[토지전용계획(1990~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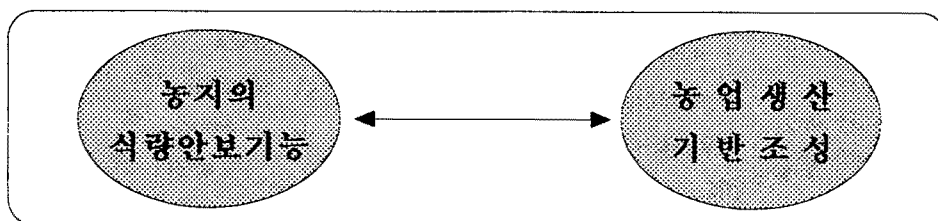
(단위 : ha)

용도 구분	계	택지	공업용지	공공용지	농지	산지	수면/기타
계	469,500	39,700	11,400	78,000	55,100	19,800	469,500
농지	260,900	27,800	6,800	31,200	-	19,800	260,900
산지	91,700	11,400	1,200	27,300	12,100	-	91,700
간척	116,900	500	3,400	19,500	43,000	-	116,900

자료 : 건설부,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p.121

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을 위해 농지관리기금 필요

- 쌀 산업의 기초자원인 농지조성과 이용의 차별성
 - 영농규모화사업 중단 ⇒ 쌀전업농 육성계획 중단 ⇒ 『규모화』를 통한 쌀생산성 향상, 쌀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농업인 소득 향상 계획 차질 ⇒ 영농(쌀) 포기 ⇒ 휴경농지 속출 ⇒ 농지 및 농촌의 피해 ⇒ 국토이용을 저하 ⇒ 국력저하(민심 유리)



지표명	1.2 기금의 안정성	가중치
		6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강상구 (☎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관리기금부 2급 전철원 (☎0343-420-3581)



평가내용

1. 기금조성재원의 합목적성

가. 재원조달 방안과 용도와의 적합성

2. 수요예측 등 장기전망에 근거한 기금재원의 확보 등 안정화 노력

가. 수요와 조성재원의 예측 체계의 합리성

나. 수요와 재원조달의 균형과 장기적 안정성

다. 장기 전망에 근거한 안정화 노력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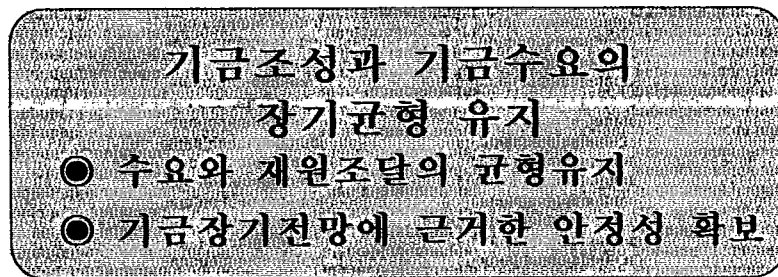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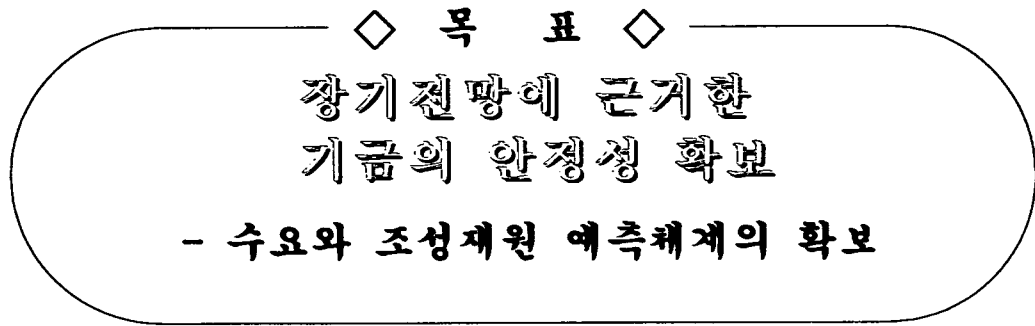
1. 운용 여건

- 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 결손에 따른 대책마련의 필요성
 - 예산(출연금) 확보대책 수립 필요
 - 기금조달재원의 다양화 검토 필요
- 영농규모화사업비 투자에 대한 가시적 효과 실현
- 식량자급기반 마련을 위한 대체농지조성사업비의 안정성 확보

2. 지표관리 방향

- 농지관리기금 조성재원 조달방법과 사용용도와의 연계체계 확립
 - 조성재원의 다양화 방안과 기금사용 용도의 명문화
 - 농업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사용과의 연계성 확립
- 수요예측체계에 의한 기금재원의 확보 노력
 - 중장기 농업정책인 45조 농업·농촌투융자실천계획과 연계 수요 예측
 - 농지관리기금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재원조성 다각화 노력
 - 통합재정 수지분석 상시화

3. 지표관리 체계도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조달	기금의 농업 정책 사업 수 행	기금 수요와 조성재원의 예측체계의 확 령	기금 재무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34조에 재원조달방법 및 용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규모화사업, 농지조성사업의 (서남해안, 대단위지구등)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조 투융자계획과 영농규모화사업의 연계 ○ 대체농지 조성을 위한 장기전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출연금의 지속적 추진 ○ 재원조성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경영개선 방안 추진

II. '95~'99까지 추진실적 요약

1. 기금구성 재원의 합목적성

□ 농지관리기금 조성재원의 종류 및 용도의 법정화

- 근거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34조
- 조성재원의 종류
 - 농지관리계정 : 영농규모화사업 용자원리금회수, 정부출연금, 재정용자특별회계, 국채발행기금차입, 용자원리금회수, 기타이자수입
 - 농지조성계정 : 농지조성비, 조성토지매각대회수, 예탁금 회수, 기타이자수입
- 조성재원의 용도
 - 농지관리계정 :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교환분합등 영농규모화사업
 - 농지조성계정 : 대체농지조성사업, 농지의 조성·이용·보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등

□ 농지관리기금 조성재원 규모 및 향후 조성 계획

- 기조성재원('99까지) : 총 80,071억원
 - 농지관리계정 : 57,011억원, - 농지조성계정 : 23,060억원
- 향후 재원조성 계획(2000 ~ 2004까지) : 총 63,987억원
 - 농지관리계정 : 51,952억원(2001년 이후 연간 1,000억원 정부출연 가정)
 - 농지조성계정 : 12,035억원

□ 농지관리기금(조성계정)조성재원 부담자별 내역('95~'99) : 9,426억원

- 국가기관 : 182억원 ○ 지방자치단체 : 1,107억원
- 공공기관 : 2,421억원 ○ 민간단체 : 5,716억원

□ 농지관리기금 운용의 적합성

- 관리계정 : 정부출연금 및 국채관리기금등으로 기금재원을 마련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을 장기 융자하고, 용자 원리금을 회수하여 재융자 함으로써 사업성과 실현
- 조성계정 : 농지전용에 따라 훼손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 하기 위하여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징수하여 간척사업등 농지조성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 실현

2. 수요예측등 장기전망에 근거한 기금재원의 확보등 안정화 노력

- 농지관리기금 수요와 조성재원 예측체계의 합리성
 - 중장기 농업정책 및 정부의 재정운용 여건을 반영
 - 기금설치 목적사업 수요예측
 - 5개년 기금운용 계획대 실적치 분석
 - 농지관리기금 중장기 전망을 위한 자체 통합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정확한 예측
 - 기금사업시행자및 사업시행인가권자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5개년 평균 계획대 실적을 99% 확보
 - 농지관리기금 재원조성 효율적 추진
 - 일반회계 출연금 확보
 - 대체농지조성비 안정적 확보
 - 조성토지매각대 효율적 징수
 - 기타 재원조성 합리적 추진

- 농지관리기금의 수요와 장기전망에 근거한 재원조성의 안정화 노력
 - 정부 일반회계의 농지관리기금 출연의 지속적 확보
 - 정부출연금 매회계년도 마다 1,000억원 이상 예산반영 강력추진
 - '94 ~ '97까지 중단되었던 출연금 '98예산 800억원 확보
 - '99 및 2000년도 : 각 400억원씩 출연
 - 매년 구조적 결손수준(2,000억원) 예산 요구
 -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원조성의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 추진
 - 농지관리계정의 탄력적 운영
 - 『농지조성계정 일시차입제도』 운영으로 기금운용의 탄력성 제고
 - 농지조성계정은 조성된 재원 범위내에서 사용계획 수립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 농지관리기금 통합재정 수지분석을 통한 기금재원의 안정화 노력
 - 농지관리계정 : 정책적 지원금리 구조차로 결손 → 정부출연 지속적 요구
 - 농지조성계정 : 조성재원 범위의 사업시행으로 기금건실화

Ⅲ. 평가 내용별 추진 실적

평가내용	1. 기금 조성재원의 합목적성
-------------	-------------------------

1. 농지관리기금 자원조달 방법과 용도와의 적합성

가. 농지관리기금 조성재원 종류 및 용도

- 조성재원 종류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 32조
- 조성재원 용도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 34조

조성재원의 종류	조성재원의 용도
<p style="text-align: center;">【농지관리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금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음자특별회계·금융기관 또는 타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기금운용 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 사업 용자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의 용자 및 장려금의 지급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집단환지 사업의 청산금 용자 및 경비의 지출
<p style="text-align: center;">【농지조성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납입금 ●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등의 매각대금 ●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기금운용 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용자 및 투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용자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조성비의 환급,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나. 농지관리기금 재원종류별 조성방법

구 분	재 원 조 성 방 법
<p>【농지관리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금 ○ 재정용자특별회계 ○ 국채관리기금차입 ○ 영농규모화사업 용자원리금 회수 ○ 기타 이자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회계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의거 예산에 반영 일반회계에서 농지관리기금에 출연 ○ 매회계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의거 예산에 반영 재정용자특별회계에서 소요 자금 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 및 차입조건은 재특회계에서 정함 (2년 거치 18년 균등분할 상환) ○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차입규모를 운용계획에 반영 소요자금 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금 부담으로 재경부 장관이 발행 ○ 기 지원된 영농규모화사업 용자 원리금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약정 및 중도 회수금 ○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발생된 이자수입
<p>【농지조성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조성비 ○ 조성토지매각대 회수 ○ 예탁금 회수 ○ 타기금으로부터 출연금 ○ 기타 이자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대체농지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신청 → 전용허가 및 부담금 부과 →납입고지서 발부(농기공)→수납 기금납입(농기공) ○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조건으로 회수하여 기금에 납입 ○ 공공기금에 예탁한 자금 및 이자 회수 ○ 실적없음 ○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발생된 이자수입

2. 농지관리기금 재원의 규모 및 내역

가. 과거 5개년 조달·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94까지	'95	'96	'97	'98	'99	누계	
계(A+B)		3,548,346	922,593	1,051,713	1,330,823	943,221	790,545	8,007,130	
농지관리 계정	조달	○정부출연금	1,044,441	-	-	-	80,000	40,000	1,164,441
		○재특차입금	179,166	162,576	213,641	235,808	-	-	791,191
		○국채관리기금	910,400	277,946	313,737	349,974	190,693	157,471	2,201,221
		○융자금회수등	346,809	167,232	195,260	242,415	274,421	318,071	1,544,208
		○전기이월	-	44,514	23,388	25,983	59,336	16,153	-
	소계(A)		2,480,816	652,268	746,026	854,180	604,450	532,695	5,701,061
	운용	○규모화사업비	1,983,602	280,000	336,540	348,398	359,849	248,042	3,556,431
		-농지매매자금	1,255,483	235,000	266,500	211,200	228,480	125,715	2,322,378
		-농지구입자금	686,907	-	-	-	-	-	686,907
		-교환분합자금	14,151	5,000	5,040	7,728	7,894	5,802	45,615
-임대차자금		27,061	40,000	65,000	129,470	123,475	116,525	501,531	
○차입금 상환		425,670	317,916	351,170	404,464	177,593	197,541	1,874,354	
○사업수수료등		27,030	30,964	32,333	41,982	50,855	44,541	227,705	
○차기이월	44,514	23,388	25,983	59,336	16,153	42,571	42,571		
농지조성 계정	조달	○농지조성비	953,009	197,491	200,467	260,929	108,725	174,948	1,895,569
		○조성토지매각대	18,310	3,225	2,703	10,542	27,093	15,597	77,470
		○예탁금 회수	-	-	-	100,000	15,000	-	115,000
		○수입이자 등	96,211	17,298	22,196	25,408	33,523	23,394	218,030
		○전기이월	-	52,311	80,321	79,764	154,430	43,911	-
	소계(B)		1,067,530	270,325	305,687	476,643	338,771	257,850	2,306,069
	운용	○농지조성사업비	858,000	184,787	219,546	211,430	282,617	202,883	1,959,263
		○농지재개발	-	-	939	5,027	4,400	2,762	13,128
		○기본조사비 등	39,020	4,649	4,719	4,877	7,035	4,287	64,587
		○기금관리비	3,199	568	719	879	808	713	6,886
○재정예탁		115,000	-	-	100,000	-	-	215,000	
○차기이월	52,311	80,321	79,764	154,430	43,911	47,205	47,205		

나. 농지관리기금 주요재원 조성과 사용자내역

□ 농지관리계정('88~'99)

구분	내역	부담종류	금액	비고
부담자	정부	○출연금	11,644	
		○차입금	29,924	
		- 재특	7,912	
		- 국채	22,012	
사용자	농업인 사업시행자	○영농규모화 지원	35,564	농특세, 등기수수료, 사업수수료
		○사업수수료등	2,277	

□ 농지조성계정

- 농지법 제40조에 의거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징수액 범위 내에서 대체농지조성사업을 추진

- 농지조성비 수납 현황

(단위 : 억원)

계	'95	'96	'97	'98	'99
9,425	1,975	2,005	2,609	1,087	1,749

- 농지조성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계	'95	'96	'97	'98	'99
11,012	1,848	2,195	2,114	2,826	2,029

○ 농지관리기금 부담자 및 사용자 내역

- 농지조성비 부담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5	'96	'97	'98	'99
계	942,559	197,490	200,467	260,929	108,725	174,948
○ 국가기관	18,220	2,944	2,843	976	9,417	2,040
○ 지자체	110,679	29,394	29,192	23,437	14,258	14,398
-시·도지사	26,889	4,157	8,136	6,682	2,494	5,420
-기초단체	83,790	25,237	21,056	16,755	11,764	8,978
○ 공공기관	242,067	28,919	42,144	82,762	29,001	59,241
-정부투자기관	233,567	27,099	41,230	81,663	26,828	56,747
-기타공공기관	8,500	1,820	914	1,099	2,173	2,494
○ 민간단체	571,593	136,233	126,288	153,754	56,049	99,269
-개인	364,237	81,159	84,438	96,865	33,626	68,149
-기타민간단체	207,356	55,074	41,850	56,889	22,423	31,120

- 대체농지조성비등 사용자 내역

(단위 : 금액단위 ; 백만원, 면적단위 ; ha)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	계		비 고
							조성면적	투자금액	
합 계	858,000	184,787	219,546	211,617	282,617	202,883	73,993	1,959,238	53지구
○경기도	58,715	40,900	52,377	56,787	40,169	32,921	8,730	281,869	5지구
김포시	7,397	-	-	-	-	-	265	7,397	대백, 약암
용진군	9,846	3,200	5,750	5,500	3,974	4,271	347	32,541	진촌
화성군	41,472	37,700	46,627	51,287	36,195	28,650	8,118	241,931	화옹, 시화
○강원도	385	-	-	-	-	-	10	385	1지구
정선군	385	-	-	-	-	-	10	385	봉정
○충남도	310,138	26,500	32,973	27,050	20,553	24,654	8,548	441,868	8지구
태안군	22,314	5,000	8,068	7,947	4,195	7,005	1,031	54,529	이원, 내, 중장
보령시	105,800	8,000	8,000	4,600	5,358	6,649	1,326	138,407	암포, 삼시도
당진군	146,524	9,500	13,000	14,503	11,000	11,000	2,845	205,527	석문, 무수
서산시	35,500	4,000	3,905	-	-	-	3,346	43,405	대호
○전북도	16,916	25,000	45,000	41,250	104,445	67,000	28,340	299,611	2지구
군산시	16,916	25,000	45,000	40,000	103,000	67,000	28,300	296,916	새만금
고창군	-	-	-	1,250	1,445	-	40	2,695	심원
○전남도	440,005	88,687	88,762	86,343	117,450	78,227	27,549	899,449	26지구
해남군	89,888	13,087	18,000	13,000	8,395	8,379	2,367	150,749	해남
진도군	52,529	11,700	8,117	8,000	7,225	6,341	1,410	93,912	군내, 보전, 소포
완도군	54,142	8,850	8,500	6,376	7,781	3,755	599	89,404	완도, 약산등 5지구
고흥군	108,399	21,050	16,500	20,000	21,675	17,787	3,827	205,411	고흥, 해창만등 6지구
강진군	48,831	9,000	8,000	7,967	5,312	3,648	726	82,758	사내, 만덕
여천군	1,424	-	-	-	-	-	14	1,424	개도
무안군	1,296	-	-	-	-	-	144	1,296	복길
신안군	5,763	-	-	-	-	-	182	5,763	산두, 상동서, 하동서
장흥군	-	-	1,004	4,000	18,062	15,317	280	38,383	삼산
목포시	77,733	25,000	28,641	27,000	49,000	23,000	18,000	230,349	영산강2, 3-1, 3-2
○경북도	17,836	-	-	-	-	-	357	17,836	9지구
고령군	5,049	-	-	-	-	-	35	5,049	좌학
문경군	344	-	-	-	-	-	19	344	영순
의성군	3,405	-	-	-	-	-	80	3,405	낙정, 신평
선산군	5,565	-	-	-	-	-	136	5,565	낙산
상주군	1,661	-	-	-	-	-	58	1,661	매협, 중동
청도군	357	-	-	-	-	-	6	357	임당
성주군	1,455	-	-	-	-	-	23	1,455	용신
○경남도	14,005	3,700	434	-	-	81	459	18,220	2지구
하동군	14,005	3,700	434	-	-	-	410	18,139	하사
거제시	-	-	-	-	-	81	49	81	산촌

※ 서남해안 간척, 대단위 농업개발, 유휴지 개발 등 농지조성사업 내역임.

3. 기금조성재원과 농지관리기금목적과의 연계성에 대한 논거

□ 농지관리기금 설치 목적

- 관련근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목 적 :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집단화, 농지조성사업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

□ 기금의 일반적 재원조성 방법

- 기금의 재원조성은 개별 기금별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 기금법에 재원 조달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재원조달 방법
 - 출연금과 법정부담금(농지조성비)으로 조성
 - 부족재원은 차입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농지관리기금의 조성재원 목적사업 수행 여부

- 농지관리계정

<조달재원>

- 주요재원 : 정부출연금, 용자원리금 회수
- 부족재원 :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재정용자특별회계차입금



<재원의 사용내역>

- 농 지 매 매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법인소유의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쌀전업농 등에게 매도
- 장기 임대차 : 전업·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의 농지를 장기임차 하여 쌀전업농에게 임대
- 교환 분 합 : 농지교환·분합시 농지가격의 차액 또는 경지정리 집단 환지시 청산금 납부액 지원

○ 농지조성계정

<조달재원>

- 주요재원 : 법정부담금(농지조성비), 조성토지매각대, 운용수익등
- 부족재원 : 조성재원 범위내에서 운용계획 수립



<재원의 사용내역>

- 서남해안 간척
 -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와 유희지를 우량농지로 개발하여 농업생산기반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
- 대단위농업개발
 - 대규모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의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 한계농지정비사업
 -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및 한정된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 보조사업
 - 농지의 제도·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홍보 등
 -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으로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기본조사·연구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사후 환경 영향조사 등

□ 농지관리기금 운용의 적합성에 대한 논거

- 농지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조성하여 법에서 정한 용도로 정확히 사용함으로써 농지관리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됨
- 관리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국채관리기금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여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을 장기 융자하여 이의 원리금 등을 회수하여 **재용자 함으로써** 사업성과 실현
- 조성계정은 농지전용에 따라 훼손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기 위하여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징수하여 간척사업등 농지조성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 실현

2. 수요예측 등 장기전망에 근거한 기금재원의 확보 등 안정화 노력

1. 농지관리기금 수요와 조성자원 예측체계의 합리성

가. 45조 농업·농촌투융자 실천계획 분석

□ 45조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수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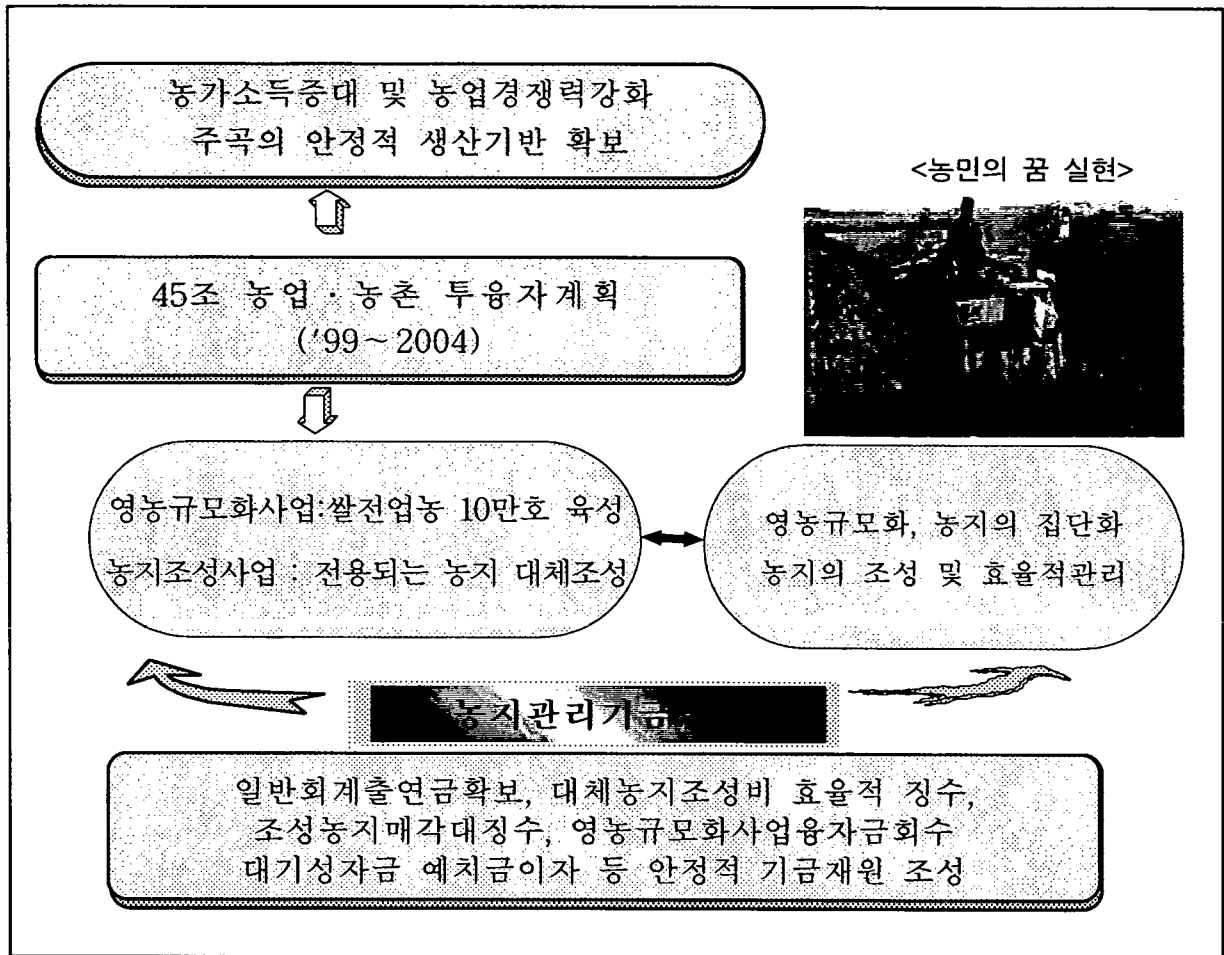
- UR 농업협정에서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 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국내소비량의 1%에서 4%를 수입(MMA)하도록 하였음
- 2004년 이후에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를 계속할 것인가 또는 관세화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04년에 다시 협상토록 규정하고 있음
- 21세기 농정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수립한('98.10.31)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 범위내에서 총 45조 원 규모의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수립·확정('99. 2.22)

□ 45조 농업·농촌 투융자실천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1999	2000~2004
45조 계획에 반영된 영농규모화사업	20,341	2,480	17,861
45조 농업·농촌투융자계획	450,526	66,137	384,389
1.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149,663	25,055	124,608
2. 건실한 농림업 경영체 육성	77,811	12,665	65,146
○ 교육 및 훈련	9,080	1,814	7,266
○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지원	45,628	7,305	38,323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강화 지원 (영농규모화사업)	23,103 (20,341)	3,546 (2,480)	19,557 (17,861)
3. 농림업의 부가가치 제고	18,063	2,857	15,206
4.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87,142	7,979	79,163
5.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의 증진	81,304	10,802	70,502
6.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36,543	6,779	29,764

□ 45조 농업·농촌투융자실천계획과 농지관리기금의 연계성



※ 45조 농업·농촌투융자 실천계획 재원별 규모

- 〈 총 투융자 규모 : '99~2004년까지 45조원 〉
- 중앙정부 투융자액 37조 8,384억원(84%)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으로 구성)
 - 지방비는 4조 7,169억원(10%),
 - 사업자 부담액은 2조 4,973억원(6%)
 - '99년~2004까지 중앙정부재정규모 약 6조 3천억원

나. 농지관리기금사업 소요자금 예측체계의 합리성 (영농규모화사업을 중심으로 분석)

□ 45조 투융자계획에 의한 영농규모화사업 수요전망

2004년도 영농규모화사업 장기비전

- 영농규모확대·농지집단화, 농업기계화 ⇒ 농업생산성 향상
 -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인 규모의 영세성 탈피.
 -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가격 경쟁력 제고
 - 국민주곡 자급기반 구축(주곡의 안정적 자급기반 확보)



농지보전목표(답)		쌀 전업농 육성목표			
논면적	벼재배면적 (A)	인원	경영규모	벼재배면적 (B)	소득목표
110만ha	92만ha	10만호	- 6만호 : 호당 5ha - 4만호 : 호당 3ha	42만ha (B/A : 46%)	38백만원

□ 영농규모화사업의 주요 실천 세부계획

- 쌀전업농 규모확대 목표면적 : 420천ha
 - '98년까지 경영면적 : 252천ha
 - 향후 확대면적 : 168천ha, 정부 지원면적(50%) : 84천ha

육성인원 (호)	지원 방법	호당 확대규모(ha)			총 확대면적(ha)		
		계	'98까지	향 후 확대	계 (100%)	정부지원 (50%)	자력확대 (50%)
100,000	계	4.2	2.6	1.6	168,000	84,000	84,000
	소 유	2.0	1.7	0.3	33,600	16,800	16,800
	임 차	2.2	0.9	1.3	134,400	67,200	67,200

□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소요액

구분	사업별	'99까지 (A)	향 후 계 획				계 (A+B)
			2000	2001	2002~2004	소계(B)	
물량 (ha)	계	76,394	8,040	9,940	60,157	78,137	154,531
	농지매매	44,435	1,760	2,243	11,096	15,099	59,540
	임대차 교환·분합	30,723 1,228	6,183 97	7,600 97	47,093 1,968	60,876 2,162	91,599 3,392
사업비 (억원)	계	28,576	2,434	3,107	12,320	17,861	46,437
	농지매매	23,223	1,232	1,658	4,992	7,882	31,105
	임대차 교환·분합	4,995 358	1,150 52	1,397 52	6,587 741	9,134 845	14,129 1,203

주: 1) 2000년 이후 물량단가(ha당/백만원): '98지원실적 기준으로 산출
 2) 자료: 농업·농촌투융자계획. 1998. 8. 농림부

□ 영농규모화사업 목표연도(2004년) 성과 추정

○ 안정적인 쌀자급기반 확보

- 2004년 쌀생산량 3,070만석 유지(쌀소비량 3,113만석의 98.5% 수준)
- 쌀전업농이 전체 쌀생산량의 46% 수준인 1,402만석 담당

○ 2004년 쌀전업농은 '96년 불변가격으로 연간 38백만원 소득수준

- 전 체 : 38백만원 (쌀소득 29백만원, 타작목 9백만원)
- 순수 쌀전업농 : 42백만원 (쌀소득 35백만원, 타작목 7백만원)
- 복합 쌀전업농 : 34백만원 (쌀소득 21백만원, 타작목 13백만원)

○ 2004년 쌀전업농 영농규모확대 계획 및 농업소득 추정

(단위: ha, 천원)

농가수	구분	'98년 현재			2004년		
		계	쌀	이모작(밭)	계	쌀	이모작(밭)
10만호	경영규모	3.1	2.6	0.5	5.3	4.2	1.1
	농업소득	22,400	18,200	4,200	38,640	29,400	9,240
6만호	경영규모	3.3	2.8	0.5	5.8	5.0	0.8
	농업소득	23,800	19,600	4,200	41,720	35,000	6,720
4만호	경영규모	2.6	2.1	0.5	4.5	3.0	1.5
	농업소득	18,900	14,700	4,200	33,600	21,000	12,600
* 쌀전업농 (3만호)	경영규모	4.2	3.7	0.5			
	농업소득	30,100	25,900	4,200			

주: 1) 농업소득: 농가경제통계, 1997. 농림부
 - 10a당 소득: 쌀 700천원(전국평균), 이모작 840천원(197농가 표본조사)
 2) 쌀전업농 3만호: '98까지 지원농가

○ 쌀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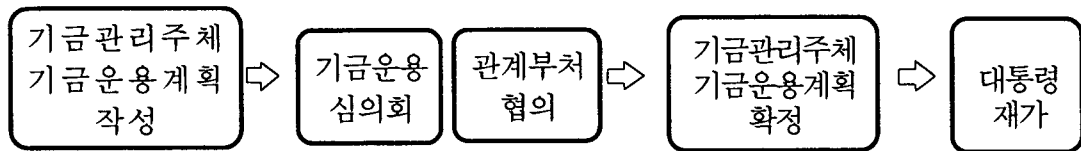
- 2004년 쌀전업농의 경우 '94년 대비 35% 감소
 - 쌀생산비(10a) : ('94) 362천원 → (2004) 232천원

○ 전문화된 쌀생산 인력 확보

- 쌀전문인력 : ('98) 29,512명 ⇒ (2004) 100,000명
 - ※ 전체 벼 재배농가수 : 80만여호
- 소규모 복합경영체의 협업화 및 자급농의 역할분담
 - ⇒ 쌀전업농이 경쟁력을 갖춘 기간농업자로 성장하여 농업발전 선도

다. 농지관리기금의 예측치(운용계획) 정확도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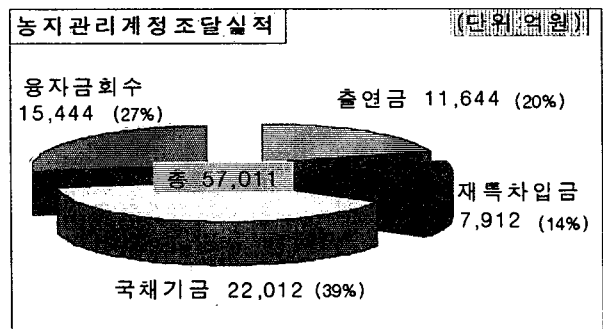
□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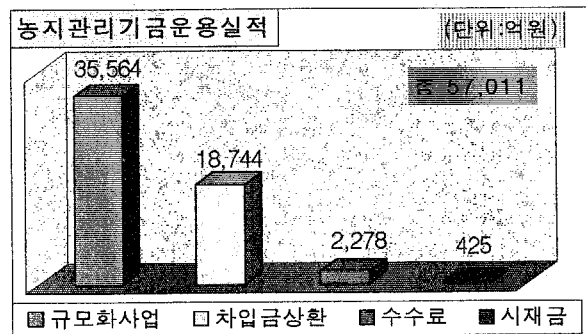
□ 농지관리기금 조성재원 구성내역

○ 농지관리계정

주요 조달내역	
- '99년까지 조달총액 :	5조 7,011억원
- 정부출연금 :	1조 1,644억원
- 국채기금 :	2조 2,012억원 (농지채권 7,027억원)
- 재특차입금 :	7,912억원
- 운용수익금 :	1조 5,442억원



주요 운용내역	
- '99년까지 운용총액 :	5조 7,011억원
- 규모화사업비 :	3조 5,564억원
- 차입금상환 :	1조 8,734억원
- 수수료등 :	2,278억원
- 차기이월 :	425억원



○ 농지조성계정

주요 조달내역	
- '99년까지 조달총액 :	2조 3,061억원
- 농지조성비 :	1조 8,956억원
- 조성토지매각대 :	775억원
- 예탁회수금 :	1,150억원
- 운용수익금등 :	2,180억원

주요 운용내역	
- '99년까지 운용총액 :	2조 3,061억원
- 농지조성사업비 :	1조 9,593억원
- 농지재개발등 :	846억원
- 재정예탁 :	2,150억원
- 차기이월 :	472억원

□ 5개년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

- 농지관리기금 중장기 전망을 위한 자체 통합 프로그램 구축으로 농지조성비 수납 및 융자금 회수 등 조성재원 합리적 예측
-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 인가권자와 긴밀한 협의로 사업간 합리적 재원 배분
- 농지관리계정 운용계획 대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95	'96	'97	'98	'99
운용규모 (5개년평균 101.8%)	계획	655,178	726,804	838,121	595,439	516,212
	실적	652,268	746,026	854,180	604,450	532,695
	%	100	103	102	101	103
규모화사업비 (5개년평균 100%)	계획	280,000	336,540	348,398	359,849	248,042
	실적	280,000	336,540	348,398	359,849	248,042
	%	100	100	100	100	100
차입금상환 (5개년평균 99.8%)	계획	319,625	351,439	406,352	177,594	197,543
	실적	317,916	351,170	404,464	177,593	197,541
	%	99.5	100	99.5	100	100
융자금회수 (5개년평균 104.7%)	계획	170,142	176,262	226,330	265,402	301,513
	실적	167,232	195,260	242,415	274,421	318,071
	%	98.3	110	107	103	105

○ 농지조성계정 운용계획 대 실적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95	'96	'97	'98	'99
조성계정(총괄) (5개년평균 98.2%)	계획	194,834	231,394	328,852	297,038	210,729
	실적	190,004	225,923	318,763	294,860	210,581
	%	97.5	97.6	96.9	99.3	99.9
농지조성사업 (5개년평균 99.4%)	계획	187,037	219,546	214,301	283,982	202,932
	실적	184,787	219,546	211,430	282,617	202,883
	%	98.8	100	98.7	99.5	100
서남해안간척 (5개년평균 99.1%)	계획	133,037	142,000	147,301	131,982	112,932
	실적	130,787	142,000	144,430	130,617	112,883
	%	98.3	100	98.1	99.0	100
대단위개발 (5개년평균 100.0%)	계획	54,000	77,546	67,000	152,000	90,000
	실적	54,000	77,546	67,000	152,000	90,000
	%	100	100	100	100	100
기타보조사업 등 (5개년평균 89.8%)	계획	7,797	11,848	114,551	13,056	7,797
	실적	5,217	6,377	107,333	12,243	7,698
	%	66.9	53.8	93.7	93.8	98.7

2. 수요와 조성재원 장기전망의 안정화 노력

가. 농지관리계정

□ 영농규모화사업 수요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 전망

○ 분석기준

- 정부출연잔액과 결손 발생액을 기준으로 기금의 안정화 노력 추진
- 소요재원 : 연차별 45조 농업·농촌투융자실천계획상의 사업비
- 조성재원
 - 용자원리금 회수는 영농규모화사업 회계시스템에 의한 상환 약정계획을 반영
 - 출연금은 일정규모 정하고 국채와 재특차입비율 50 : 50으로 가정

○ 농지관리계정 조달·운용 안정화 전망

- 2001년 이후 연간 2,000억원 출연 가정

(단위 : 억원)

구 분	'99까지	2000(p)	2001	2002	2003	2004
◦ 재원조달	41,568	3,800	4,254	5,828	10,060	7,650
- 정부출연금	11,644	400	2,000	2,000	2,000	2,000
- 재특차입금	7,912	-	1,100	1,914	4,030	2,839
- 국채차입금	22,012	3,400	1,154	1,914	4,030	2,839
◦ 용자원리금회수	15,442	3,271	3,498	3,836	4,033	4,366
◦ 규모화사업비	35,564	2,434	3,107	3,609	4,431	4,280
◦ 차입금원리금상환	18,743	4,557	4,372	5,685	9,291	7,391
◦ 결손액 (누계)	1,678 (8,135)	1,656 (9,791)	1,656 (11,447)	1,739 (13,186)	1,946 (15,132)	1,774 (16,906)
◦ 출연금잔액	3,509	2,253	2,597	2,858	2,912	3,138

- 2001년 이후 연간 1,000억원 출연 가정

(단위 : 억원)

구 분	'99까지	2000(p)	2001	2002	2003	2004
◦ 재원조달	41,568	3,800	4,298	5,968	10,302	8,580
- 정부출연금	11,644	400	1,000	1,000	1,000	1,000
- 재특차입금	7,912	-	1,649	2,484	4,651	3,790
- 국채차입금	22,012	3,400	1,649	2,484	4,651	3,790
◦ 용자원리금회수	15,442	3,271	3,498	3,836	4,033	4,366
◦ 규모화사업비	35,564	2,434	3,107	3,609	4,431	4,280
◦ 차입금원리금상환	18,743	4,557	4,416	5,823	9,532	8,293
◦ 결손액 (누계)	1,678 (8,135)	1,656 (9,791)	1,711 (11,502)	1,880 (13,382)	2,189 (15,571)	2,158 (17,729)
◦ 출연금잔액	3,509	2,253	1,542	662	△527	△1,685

□ 기금의 수요충족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재원조성 안정화 노력

○ 정부 일반회계 농지관리기금 출연 지속적 요구

- 농지관리기금 관리계정의 유일한 조성재원인 일반회계 출연금 확보를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1,500억원 이상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음
- 1회계년도 운용을 위한 부족자금 분석(예 2001년도 예산 요구)

수입액 3,525억원	지출액 5,502억원	부족액 1,97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원리금회수 3,498억원 ◦ 시재금 예치금이자 2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및채특차입금이자 2,025억원 ◦ 사업관리및제세금 370억원 ◦ 기금설치목적사업비 (규모화사업) 3,10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금 2,000억원 <차입에 의존할 경우 이자 발생분 조달방법 지난으로 기금 결손 누중 → 기금설치목적 사업 추진 곤란>

- 차입금리와 운용금리 차손 7.5%수준으로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하여야 하나 재정 형편상 매년 400억원 수준 출연에 그치고 있음

□ 재정용자특별회계 용자금예산 지원요구

-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차입금상환을 위한 재특 차입액의 50%수준 재정용자특별회계 지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재특 차입조건 : 2년거치 18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7.25%
- 국채 차입조건 : 3~5년 만기 일시상환, 금리 9.48%

□ 조달재원 다양화 방안 모색

- 기금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금 이외의 제3의 고정적인 조달 재원 마련 필요
- ⇒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액을 농지관리계정 조성 재원화 필요

※ 농지전용부담금 개요 및 연도별 납입액

<개요>

- 부과 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41조
- 부과 목적 : 농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 부과 대상 :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코자 하는 자
- 부과 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
- 납부 계정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사용

< 연도별 전용부담금 농특회계 납입액 >

합계	'92	'93	'94	'95	'96	'97	'98	'99
16,640	540	1,008	2,441	2,521	3,150	3,542	1,205	2,233

※ 2000년도 납입액은 농특회계 세입예산 총액의 4.02% 해당

- 농지관리기금 재무구조개선안 마련을 위한 『농지관리기금대책반』 편성 운영중

나. 농지조성계정

□ 농지조성계정 조달·운용 전망

(단위: 억원)

구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조달	농지조성비	8,548	1,547	1,624	1,706	1,791	1,880
	조성토지매각대	1,654	56	67	529	501	501
	기타	1,732	269	288	380	390	405
	전기이월	101	101	7	6	1	3
계		12,035	1,973	1,986	2,621	2,683	2,789
운용	농지조성사업	11,626	1,886	1,900	2,540	2,600	2,700
	농지재개발	160	32	32	32	32	32
	농지전산화등	200	40	40	40	40	40
	기금관리비	39	7	8	8	8	8
	차기이월	9	8	6	1	3	9

○ 조성재원 장기전망 분석자료 산출 근거

- 농지조성비는 최근 5년치 추세가 IMF영향으로 추세분석이 불가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잠정 경제성장률(5%증가 추세)를 적용
- 조성토지 매각대금은 실제 현재 수납중인 19개지구 연도별 상환계획과 준공지구 매각시기를 감안 추정
- 기타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은 농지조성비 및 매각대금 수납증가 비율만큼 증가예상으로 추정 하였음

○ 대체농지조성사업 장기전망 분석

- 농지조성사업은 현재 서남해안 14개지구, 대단위 3개지구등 17개지구 시행중이며, 총사업비 3조4,728억원중 '99까지 1조5,311억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마무리 될 때까지 단가인상을 감안 약 2조1,359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 이중 향후 5개년 동안 조달규모를 감안 1조1,626억원 지원이 가능(향후 투자계획의 54%)

- 시행중인 농지조성사업 지구 투자전망
- 대단위지구 장기투자 소요액

(단위 : 억원)

지구명	총사업비	'99까지집행	집행잔액	단가인상 10%적용	비고
계	13,106	4,293	8,813	9,694	
영산강Ⅲ-1	2,809 (5,723)	710 (1,526)	2,099 (4,197)	2,309	
영산강Ⅲ-2	1,384 (2,414)	614 (873)	770 (1,541)	847	
새만금	8,913 (22,138)	2,969 (10,251)	5,944 (11,887)	6,538	

- 서남해안간척지구 장기투자 소요액

(단위 : 억원)

지구명	총사업비	'99까지집행	집행잔액	단가인상 10%적용	비고
계	21,622	11,018	10,604	11,664	
화옹	3,523	2,396	1,127	1,240	
남포	1,474	947	527	580	
석문	2,558	2,053	505	556	
이원	1,224	511	713	784	
해남	1,757	1,507	250	275	
군내	972	623	349	384	
사내	668	557	111	122	
고금	380	265	115	127	
고흥	3,064	1,395	1,669	1,836	
진촌	458	325	133	146	
삼산	889	384	505	720	
시화	4,441	24	4,417	4,859	
산촌	39	1	38	42	
증장	175	30	145	160	

※ ()는 국고를 포함한 전체 예산액으로 집계에는 포함 안됨
 대단위지구는 총사업비 잔액을 국고와 기금 50:50 투자비율 적용

○ 농지조성계정의 안정화 방안

- 농지조성계정은 농지법에 의거 전용되는 농지에 부과하여 징수되는 농지조성비에 맞추어 목적사업인 대체농지조성사업을 수행하므로 재원의 안정화보다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기금운용의 목적임

다. 농지관리기금 통합재정 수지분석을 통한 재원안정화 노력

□ 농지관리계정

○ 통합재정 수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	합 계
○ 운 용 규 모		24,808	6,523	7,460	8,542	6,044	5,326	57,010
수 입	- 자체세입	3,468	1,673	1,952	2,424	2,744	3,180	15,441
	- 정부내부수입	21,340	4,405	5,274	5,858	2,707	1,985	41,569
	- 전기이월	-	445	234	260	593	161	-
지 출	- 사 업 비	19,836	2,800	3,365	3,484	3,598	2,480	35,563
	- 사업관리비	270	310	323	420	509	445	2,277
	- 정부내부지출	4,257	3,179	3,512	4,045	1,776	1,975	18,744
	- 차기이월	445	234	260	593	161	426	426
○ 통합재정수지		△16,638	1,437	1,736	1,480	1,363	△255	△22,399
- 자체세입		3,468	1,673	1,952	2,424	2,744	3,180	15,441
- 사업비및관리비		20,106	3,110	3,688	3,904	4,107	2,925	37,840
○ 정 부 출 연		10,444	-	-	-	800	400	11,644

○ 농지관리계정 순조성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98까지	'99		누 계
		계 획	실 적	
순 조 성 액	24,193	233	185	24,376
○ 농민융자잔액	24,032	125	△80	23,950
○ 시 재 액	161	107	265	426

○ 농지관리계정 주요항목 현황

- 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 대여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용자)액	회 수 액	대여잔액
계	35,564	11,614	23,950
○ 농지매매자금	23,224	5,860	17,364
○ 농지구입자금	6,869	4,009	2,860
○ 농지임대차자금	5,015	1,529	3,486
○ 교환·분합자금	456	216	240

- 농지관리기금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차입액	상환액	잔 액	비 고
계	29,924	9,852	20,072	이자는 미포함
○ 재 특	7,912	748	7,164	
○ 국채기금	14,985	2,077	12,908	
○ 농지채권	7,027	7,027	-	

○ 통합재정에 따른 재원조성분석

-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은 농어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규모확대 및 전문화·규모화된 쌀생산 전문경영체를 적극 육성해 온 결과, 농업인의 높은 호응속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정착되고 있으며,
- 재정수지 측면에서 '99까지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영농규모화사업 3조 5,563억원(농민용자잔액 2조 3,95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정부재정부담액)이 2조 2,339억원을 출연하여야 했으나 재정지원의 한계로 52%인 1조 1,644억원만 지원이 되어 정책적 지원 금리구조로 인한 구조적 역금리 현상으로 기금이 잠식되고 있음

- 정부일반회계 출연규모 축소로 차입 의존도가 높고(51.0%)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와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기금 결손액이 누적적으로 발생 → 매년 기금운용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환 재원 소요로 인하여 영농규모화사업비는 오히려 감소 추세 (사업 시행의 걸림돌)
- 2004까지 영농규모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결손 발생액 이상 수준의 정부출연 확대 정책 필요, 차입금의 경우 이자율이 높은 국채관리기금 대신 재특회계에서 지원토록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태임

□ 농지조성계정

- 통합재정 수지현황
 - 통합재정 수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	합계
○ 운용규모		10,675	2,703	3,057	4,766	3,388	2,579	23,061
수입	- 자체세입	10,560	2,122	2,196	2,911	1,626	2,080	21,495
	- 정부내부수입	115	58	58	1,057	218	60	1,566
	- 전기이월	-	523	803	798	1,544	439	-
지출	- 조성사업비	8,580	1,848	2,205	2,165	2,870	2,056	19,724
	- 보조사업비	390	46	47	49	71	44	647
	- 기금관리비	32	6	7	8	8	7	68
	- 재정예탁	1,150	-	-	1000	-	-	2,150
	- 차기이월	523	803	798	1,544	439	472	472
○ 통합재정수지		1,558	222	△63	689	△1,323	△255	1,056
- 자체세입		10,560	2,122	2,196	2,911	1,626	2,080	21,495
- 사업비및관리비		9,002	1,900	2,259	2,222	2,949	2,107	20,439
○ 농지조성비		9,530	1,975	2,005	2,609	1,087	1,749	18,955

○ 농지조성계정 순조성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98까지	'99		누 계
		계 획	실 적	
순 조 성 액	1,543	△314	56	159,863
○ 공자기금예탁	1,000	-	-	1,000
○ 재개발대여잔액	104	23	23	127
○ 시 재 액	439	△337	33	472

○ 통합재정에 따른 재원조성분석

- 농지조성사업은 농지법 제40조에 의거한 농지조성비 및 간척사업으로 인한 조성토지매각대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한 국고조성토지 매각대금 수입이 주된 재원으로 '81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지기금이 설치되었고
- '90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흡수되어 현재까지 1조 8,956억원이 부과징수 되었으며 '97년 2,610억원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98년 IMF체제이후 기업의 설비투자의욕 저하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으나, '99년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성비 수납액이 증가 추세
- 농지조성계정의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식량자급 기반에 기여할 수 있는 간척 등 대체농지조성비재원 확충으로 추진 중인 간척사업의 조기완공에 기여할 것임

여 백

지표명	1.3 기금의 경영개선 노력	가중치
		6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강상구 (☎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관리기금부 2급 전철원 (☎0343-420-3581)

평가내용

1. 기금 경영개선 노력

- 가.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금의 발전 및 개선 노력
- 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
- 다. 누적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소방안의 적정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 여건

-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금의 경영개선의 필요성
 - 2004년 WTO 재협상 등의 외부환경의 도전
 - 농업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관리제도의 변화
 - 기금 경영개선을 위한 전산화의 필요성

- 적자해소를 통한 기금의 경영개선 요구
 - 누적적자 해소방안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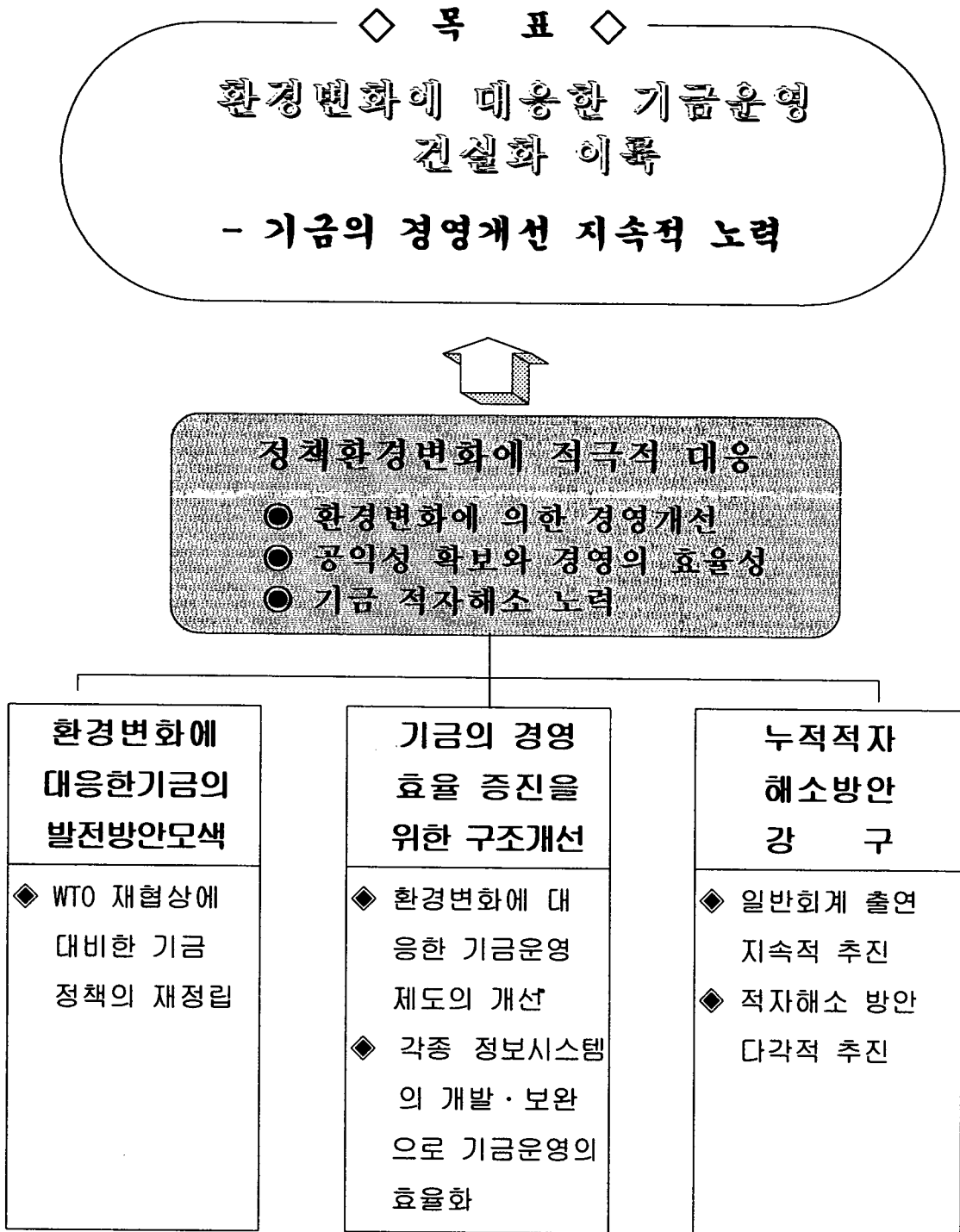
2. 지표관리 방향

-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기금의 발전 및 개선 노력
 - 정부재정 운용계획의 변화등에 대비한 대처방안 모색
 -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의 변화 추구

- 환경변화에 대한 기금관리제도의 개선노력
 -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노력

- 관리계정 적자해소 대책 수립·추진
 - 정부출연금의 확대 노력
 - 적자해소 방안의 다각적 노력 정도

3. 지표관리 체계도



II. '95~'99까지 추진실적 요약

1. 기금의 경영개선 노력

1.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금발전 및 개선노력

- 2004년 WTO 재협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책
 - 『45조 농업·농촌투융자실천계획』의 수립·확정으로 농지관리 기금의 지원
 - 농지관리계정 : 20,341억원(84천ha)
- 환경변화에 맞춰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반 규정의 개정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개정으로 기금의 체계적 관리
 - '90 ~ '99까지 9회에 걸쳐 개정
 - 『조성토지매각규정』 제·개정으로 조성된 농지의 효율적 관리
 - '85 ~ '99까지 6회에 걸쳐 개정

2.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구조개선 노력

- 대체농지조성비·수납제도 개선으로 합리적 부담금 관리

< 개선내용 >

- 고지납입제도 → 신고납입제도
- 농·수·축협(5,200개소) → 전 금융기관(12,000개소), GIRO제도 도입
 - GIRO제 도입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 전 금융기관 납부가능으로 대민 서비스 강화
- 전용부담금 수익의 안정적 확보
- 농지조성사업 투자재원 확보로 농지관리기금 경영 효율 증진

□ **계정간 자금 일시전용 근거 마련**

- 농지관리계정과 농지조성계정간 소요자금 일시전용 근거 마련
(근거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11조)
-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 자금소요를 해결

□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부과기준 현실화**

- 도입배경
 - 농지조성비 부과기준 현실화로 우량농지 보전
 - 농지조성비 단가변경 내역

(단위 : 원/m²)

구 분	당 초('97. 1. 1)	변 경('99. 2. 1)	인상율(%)
① 경지정리 논	5,840	7,200	23
② 용수개발 논	9,600	11,900	24
③ ①+② 논	11,840	14,600	23
④ 경지정리 밭	4,710	6,000	27
⑤ ①~④ 제외	3,600	4,500	25

- 기대효과
 - 고시단가를 농지가격과 연계로 농지전용 억제 효과
 - 농지관리기금 재원의 확충으로 기금경영의 안정화에 기여

□ **위탁관리조직 slim화**

- '98년도부터 조직 슬림화로 획기적 비용 절감
 - ('98) 71백만원, ('99) 97백만원 절감

□ **기타 구조개선 노력**

- 법정 부담금 GIRO제도 도입
- 기금운용을 위한 전산 현대화 추진 정보화 시대에 대응

3. 누적적자가 발생할 경우 해소방안의 적정성

□ 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 다각적 적자해소 노력으로 기금의 건실화 추진

- 농지관리계정 적자 누계 : 8,135억원('99년 말 현재)
- 농지관리계정 적자 요인
 - '94~'97까지 농지관리계정 주재원인 정부출연금의 중단
 - 영농규모화사업 재원을 고금리(5~14%)로 차입 저금리(3%)지원으로 인한 금리차(5~11%)
- 적자해소를 위한 노력
 - 정부출연금 확대 추진
 - '98년 800억원, '99년 400억원, '2000년 400억원
 - '94년 이후 조성재원의 금리차손 이상 일반회계 출연 지속 요구 (이자지출이 없는 정부출연금의 지원 확대 필요)
 - 기금사업(영농규모화사업) 저비용·고효율의 사업제도도입
 - 농지매매, 교환분합 이자율 상향 : 3 → 4.5%(1.5%인상)
 - 농업인 자부담제도 실시
 - ⇒ 단가/ 평 3만원까지 : 10%
 - 3만원 초과분 : 전액
 - 저비용, 고효율의 임대차 위주로 전환
 - ⇒ 농지매매 및 임대차 사업 지원 비중 조정 (3 : 7 → 2 : 8)

Ⅲ. 평가 내용별 추진 실적

평가내용	1. 기금의 경영 개선 노력
-------------	------------------------

1.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금의 발전 및 개선 노력

가. 2004 WTO재협상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기금의 발전

□ 농업정책환경변화와 농지관리기금의 연계성

농업정책 환경변화	기금의 발전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년 UR 협상의 시작과 95년 WTO 공식 출범 ○ 농업개방화 추세의 진전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을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발전종합대책('89. 4) - 농어촌구조개선대책('91. 7) ○ UR협상 타결('9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의 경우 「개도국 지위」를 인정 관세화 조치 10년간(2004년도 재협상)유예 - MMA(최소시장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 : '95년 1% (5만1천톤) → '99년 2%→2004년 4%(20만5천톤) ○ 제2의 UR협상(2004년 WTO 재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농정방향 정립 「45조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수립·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관리기금설치('90. 7) ○ 농지관리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개발기금중 농지구입자금 관련 채권채무 인수 ○ 농지조성계정 농지기금 흡수 ○ 농지전용부담금 징수('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를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계정)에서 병행시행 ○ 쌀전업농 육성계획수립추진('9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자율추진방식」 도입 - WTO 대응 영농규모화사업대상자 쌀전업농으로 한정 ○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 따른 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2004 : 168천ha(20,341억원) - 정부지원 : 84천ha(50%), - '99년:2,480억원, - 2000이후:17,861억원

나. 농지관리기금 관리제도 개선노력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훈령) 제정 및 개정

- 농지관리기금은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세부적 사항을 총 7장 1부칙의 골격으로 『농지관리기금운용지침』을 제정하여 기금의 체계적 관리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구성내역

제1장 : 총칙

제2장 : 기금의 운용계획 및 집행

제3장 : 기금의 대여

제4장 : 기금의 투자

제5장 : 기금의 보조

제6장 : 기금의 회계및위탁관리

제7장 : 영농규모화사업수수료

제8장 : 여유자금운용

제9장 : 보칙

부칙 : 시행일 및 경과조치

- 농지관리기금운용지침은 '90년 제정이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동법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 개정과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9회에 걸쳐 개정·보완하였음.
- 특히 '97년 이후부터 새로이 개정된 “농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부합되도록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요령”과 “농지관리기금여유자금운용규정”을 통·폐합 하여 훈령으로 격상하는 등 제도를 보완·정비하였음.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개정 현황

- 농지관리기금 : 농지27210~1864호('90.10.29)호, 농지27210~38호('92.1.17)호
운용지침 농지51316~26호('93. 1.11)호, 농지51316~33호('94. 1.20)호
 농지51316~387('94. 6.27)호
- 농지관리기금 : 농지51316~11호('95. 1.10)호
사무처리요령 농지51316~624호('96. 7.31)호
- 농지관리기금 : 농지51316~1257호('97.12.16)호
사무처리규정 : 농지51316~1798호('99.12.31)호

□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매각규정 개정

- 조성토지매각규정은 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의 투자 및 회수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립하여 기금으로 조성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금의 건전성 확보
- 1985년 12월 2일 농림수산부 훈령으로 제정되어 농지관리기금을 투자하여 조성된 토지의 매각과 매각대금처리 세부규정으로 활용

조성토지매각규정 주요 내용

- 조성토지 매각계획수립
- 일시위탁경작·관리에 관한 규정
- 조성토지매수대상자, 매각예정가격결정
- 조성토지매각방법(매각추진위원회, 매각공고, 계약체결 등)
-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 사업시행자가 수납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 매각대금의 농지관리기금 불입
- 매각토지의 전매제한 및 소유권이전등기
- 미매각 또는 계약취소된 토지등의 처리 절차
- 매각시행에 따른 관리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매각대금징수비 집행 기준

- 조성토지매각규정은 '85년 제정이래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 정비와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6회에 걸쳐 개정 정비 하였음

조성토지매각규정 개정 내용

- 1985.12. 2 농림수산부훈령으로 제정
- 1989. 4.26 농림수산부훈령 제688호 개정
- 1994. 2.12 농림수산부훈령 제780호 개정
- 1995. 2. 2 농림수산부훈령 제809호 개정
- 1996. 5.29 농림수산부훈령 제860호 개정
- 1997. 5.20 농림부훈령 제903호 개정
- 1999.12.31 농림부훈령 제1010호

2.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구조개선 노력

가. 농지조성비 수납제도 개선노력

□ 대체농지조성비 수납제도 개선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90이전까지 고지에 의거 농지전용자(민원인)가 직접 납입하는 고지납입제도를 택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시 고지납입제도와 병행하여 현지에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납입제도를 도입.
- 주요내용
 - 종전의 고지납입제도와 병행하여 농지전용 허가시 현지에서 농지 전용자(민원인)가 자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납입제도를 추가
 - ⇒ 민원인들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
- 개선효과
 - 일 평균 민원인 10인 이상(년간 3,000명) 내방에 대한 편의제공
 - 민원인의 문의(방문 또는 전화)에 따른 시간 및 경비절약

□ 농지조성비 고지 및 수납업무 지속적 개선

○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1. 농지조성비 납입 고지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내역 통지서 접수 (관할청 →기금위탁관리자) ○ 납입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고지 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의무자(고지서만 송부) - 관할청(공무원에 의한 통지) ㉡ 발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투작성(일반봉투) - 직인날인(공사 사장) - 발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생략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투작성(창봉투) - 위탁관리자 등록인 날인(농지관리기금출납담당이사인) - 발 송
○세부내용 -관할청통지 -직인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에 의한 통지 ○ 일반봉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처 전산출력한 후 봉투에 부착 ○ 공사 사장직인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 생략 ○ 창봉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처를 전산출력 내용 그대로 삽입 ○ 기금위탁관리자 등록인으로 사용 "농지관리기금출납담당 본부장인"

○ 개선효과

항 목	개 선 효 과
○ 관할청 공문서 생략 ○ 창봉투 사용	○ 년 10,000건에 관한 공문생략에 따른 업무량 감소 ○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 통지시 결봉투 작성 불필요에 따른 행정간소화
○ 위탁관리자 등록인 사용 (농지관리기금 출납담당이사)	○ 공사 직인 대신 기금위탁관리자 등록인을 사용 하므로써 시간절약

나. 계정간 자금 일시전용근거 마련

- 추진배경
 - 농지관리계정의 영농규모화사업이 농한기인 1월~6월에 집중됨에 따라 일시적 자금 부족 현상 해소방안 마련
 - 매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총칙에 반영하여 운용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투명성 확보 필요
- 추진내용
 - '99년 12월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개정시 계정간 일시차입 조항 신설
 - 시행일 : 2000년 1월 1일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11조 내용

제11조(자금의 일시차입)

- ① 농지관리기금의 농지관리계정과 농지조성계정간에는 자금집행의 사정에 따라 자금을 당해 회계년도 중 무이자로 일시차입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의거 자금의 계정간 일시차입한 때에는 일시차입사유, 차입액 및 차입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업 자금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1 ~ '99 일시차입액 : 5,840억원(년 평균 649억원)>

(단위:억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 규모화사업	3,335	3,316	4,280	2,384	2,800	3,365	3,384	3,598	2,480
○ 일시차입	1,126	2,110	500	-	217	463	1,070	74	280
○ 비율(%)	33	64	12	-	8	14	32	2	12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농지조성계정의 대기성 자금을 일시적으로 전용하여 농지관리계정사업자금으로 집행 하므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대 농민 편익증진에 기여

다. 농지전용규제 강화정책과 연계된 농지조성계정 재원 안정화

□ 농지전용 규제강화 배경

- 우량농지보전을 강화 및 대체농지조성을 위한 농지조성비 부과 기준 현실화
- 1990년대 초 토지규제완화 조치 후 농지감소 면적은 크게 증가
 - 특히 농지전용허가, 협의 권한 등이 전부 시·도에 위임된 '95년과 '96년의 경우는 각각48천ha, 40천ha를 기록하였음.
 - 최근 5년간 농지는 매년 약27천ha씩 감소하고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에 차질이 우려됨

□ 농지조성비 단가 변경 내역

시행년월일	단 위	절 대 농 지		상 대 농 지	
		답	전	답	전
1990. 5.14	원/m ²	3,600	2,160	2,630	1,550
1991. 1.15	원/m ²	3,600	2,160	3,600	2,160
1992. 9.21	원/m ²	3,600	2,160	3,600	2,160
1997. 1. 1	원/m ²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5,840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9,600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11,840 ○ 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4,710 ○ 기타경지(1,2,3,4를 제외한 농지) : 3,600			
1999. 2. 1	원/m ²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7,200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1,900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14,600 ○ 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6,000 ○ 기타경지(1,2,3,4를 제외한 농지) : 4,500			

□ 기대효과

-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고시단가를 농지가격 변동시 반영 하므로써 농지전용억제효과와 농지관리기금의 안정적 재원마련에 기여
 - 대체농지조성비재원 확충으로 추진중인 간척사업의 조기 완공에 기여
- 불요불급한 농지전용 수요를 억제, 농지잠식을 방지

라. 농지조성비 수납제도 개선(GIRO제도 도입)

□ 도입배경

- 수납기관을 농·수·축협으로 한정되어 납부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전국 어느 곳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 수납체계 구축 필요성 인식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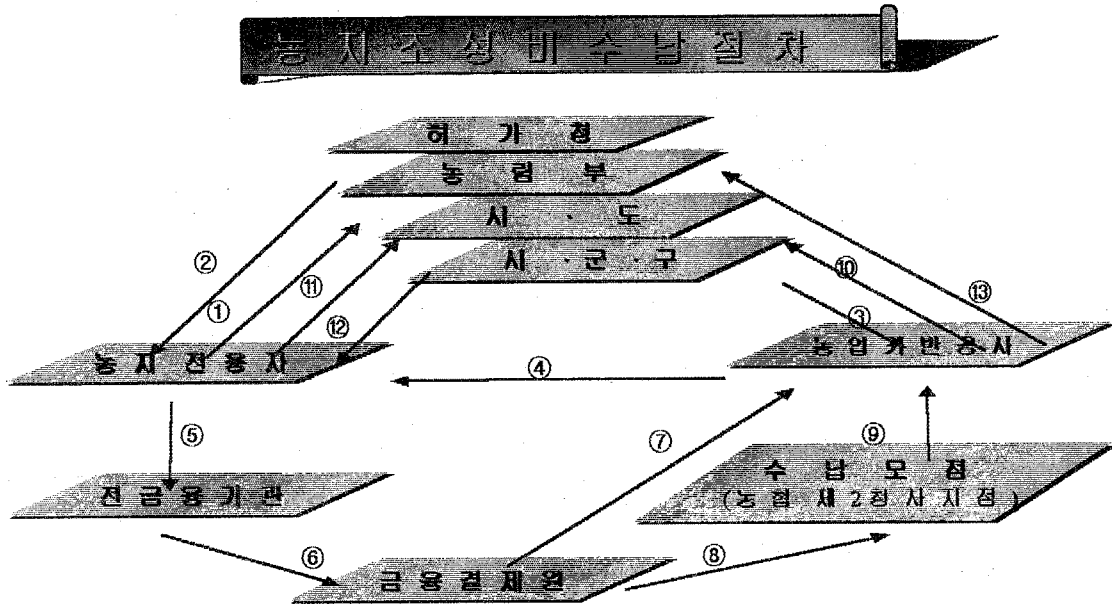
- 당초 : 고지서 발부에 의한 농·수·축협(5,200개소)에 한정하여 납부
- 변경 : 농·수·축협뿐만 아니라 전 금융기관 및 우체국(12,000개소) 등 전국 어느 곳에서도 납입이 가능한 지로제도 도입
 - OCR : 지로용지 공사에서 발급고지납입
 - MICR : 지로용지 관할청에서 수기작성 자진납부
-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수납 지로제 도입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SERVER	- SERVER(128MB)	1조	
○ PRINER	- Line, Laser, Pet	2대	
○ PC(펜티엄)	- 586(17인치)	8대	
○ 전원장치	- 향온향습기외 1	2대	
○ S/W 및 LAN공사	- ORACLE외 6종	4식 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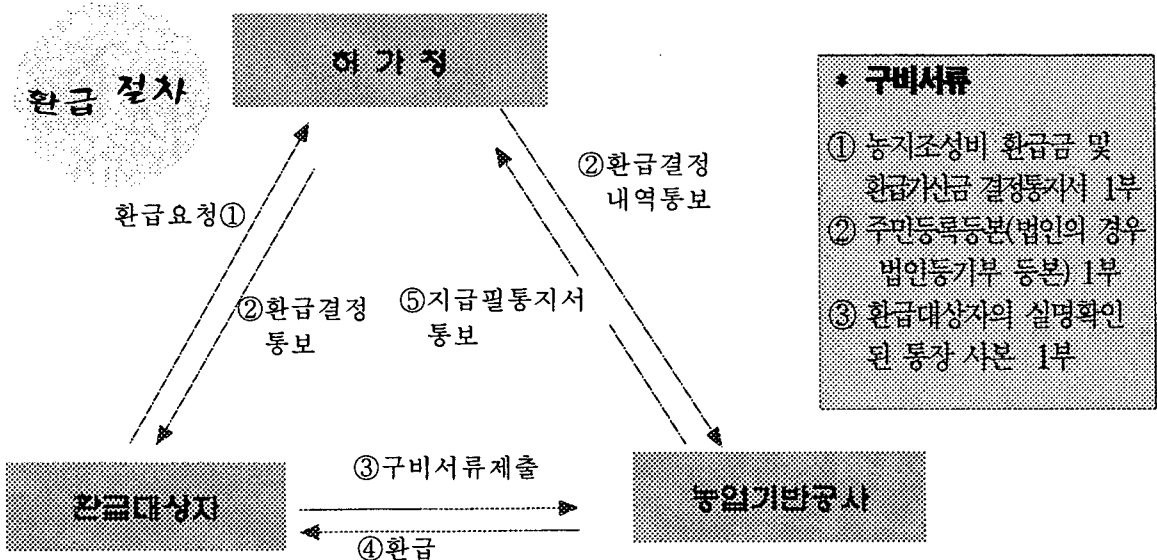
□ 기대효과

-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시간절약 및 서비스 확대
- 농지조성사업 투자재원확보로 기금재원 경영개선에 기여

《농지조성비 수납 및 환금절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지 전용 신청 ② 농지 전용 허가 ③ 농지 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 결정 통보 ④ 납입 통지서 발급 ⑤ 농지 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 ⑥ 지로 수납 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지로 입금 통지서 송부 ⑧ 지로 수납 자금 입금 통지 ⑨ 입금 보고 ⑩ 수납 사항 통보 ⑪ 농지 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 영수증 제출 ⑫ 허가증 교부 ⑬ 미납 사항 통보 (매월) |
|---|--|



마. 전산장비 현대화를 통한 농지관리기금 효율적 관리

□ 추진배경

- 농지법 시행('96.1.1) 및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
-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및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에 따른 농지전용건수 대폭 증가
- 주 컴퓨터(586 PC급)의 용량부족으로 과부하 현상 등에 따른 시스템 운영의 불안정 및 업무처리 속도 저하

□ 추진내용

- 시스템운영의 안정성과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 도입
 - H/W(주컴퓨터, PC, PRINTER, 백업 및 전원장치) 및 S/W
- 시스템 표준화와 타 시스템의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체제 구축

품명	규격	수량	비고
○ SERVER	- 128MB • SERVER : DTC4000 - J30 • CLIENT : 586C	1조	
○ PC	- PENTIUM(100MHZ) (모니터 17인치 칼라)	8조	
○ PRINTER	- LINE 및 LASER PRT	2대	
○ LAN	- LAN 설치 공사	1식	
○ 향온향습기	- 3R/T		

- DATA BASE 구축을 위한 파일구조의 변환(RDBMS)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및 4세대 언어(POWER BUILDER) 구축

- S/W 패키지 및 프로그램 변환 : '96. 5. 17 ~ '96. 10. 14(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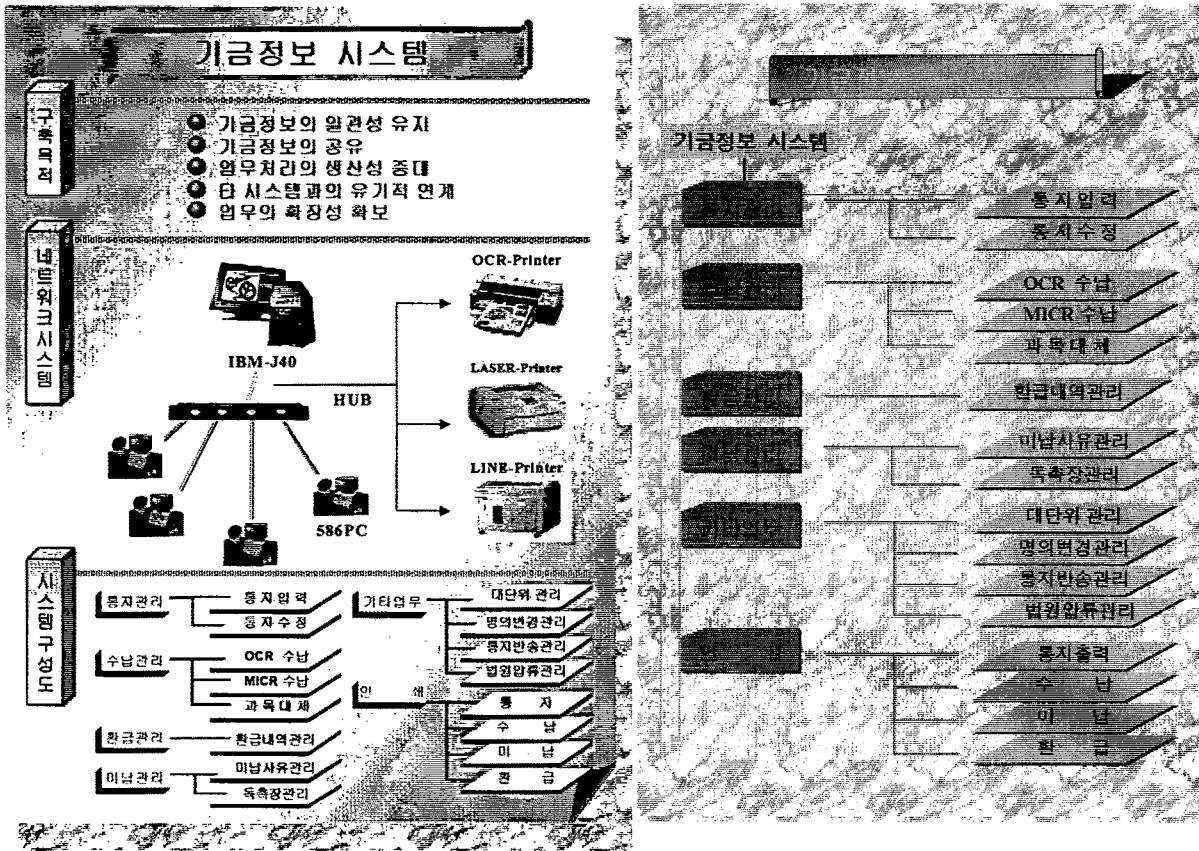
구분	품명 및 규격	수량	비고
○ S/W 패키지	○ RDBMS-ORACLE	1세트	
○ 개발언어	○ Power Builder-4.0개발	1세트	
○ 프로그램 변환	○ RDBMS설계(ER-WIN사용) ○ 기존프로그램 및 데이터 변환 ○ 전산 프로그램 보완 등		

- 고지수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데이터 변환
- 농지법시행과 관련 고지수납 관리 내용 및 서식 변경 등 전산프로그램 보완

□ 기대효과

- 정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업무의 고도화

〈기금정보 시스템의 구조 및 활용 연계도〉



기금정보

0000

- 농림부수탁금지수납기관으로서 각종 통계자료 관리
- 농림부와의 25개 하기청의 각종 통계자료 서비스
- 대만 서비스 업무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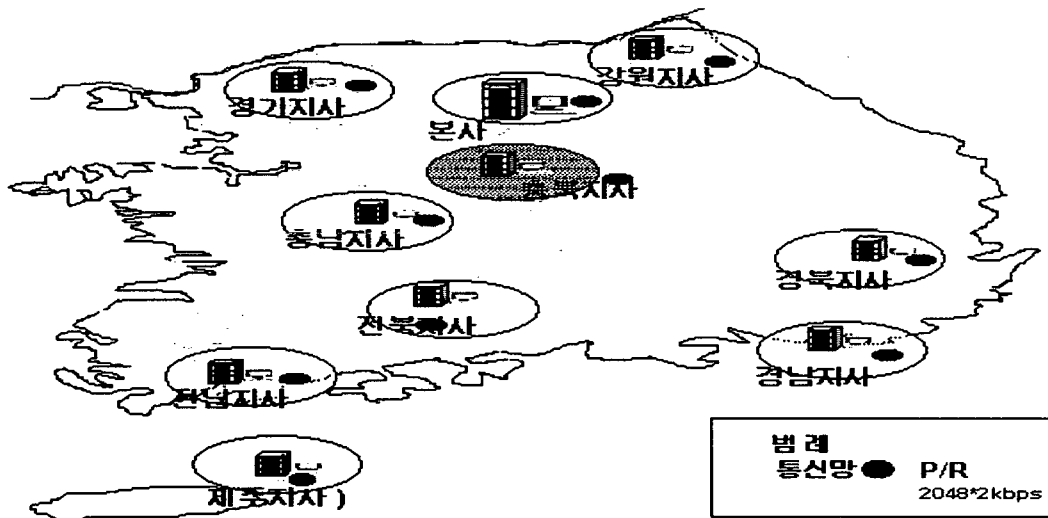
바. 영농규모화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개발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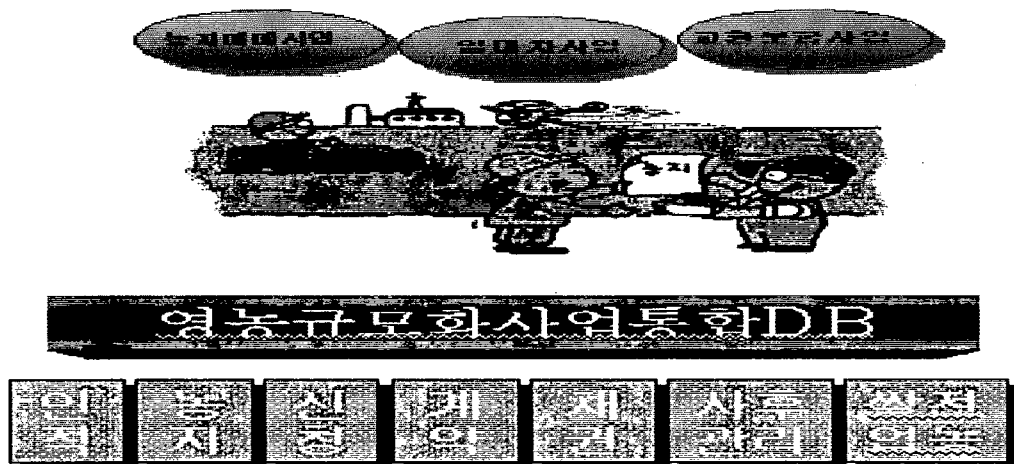
- 영농규모화사업통합관리시스템은 분산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 의한 네트워크로 연결 On-line화 함으로써 사업관련 자료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 사용

□ 통합관리시스템 구성

- 분산 Client/Sever 컴퓨팅 환경(9개지사 Sever분산 DB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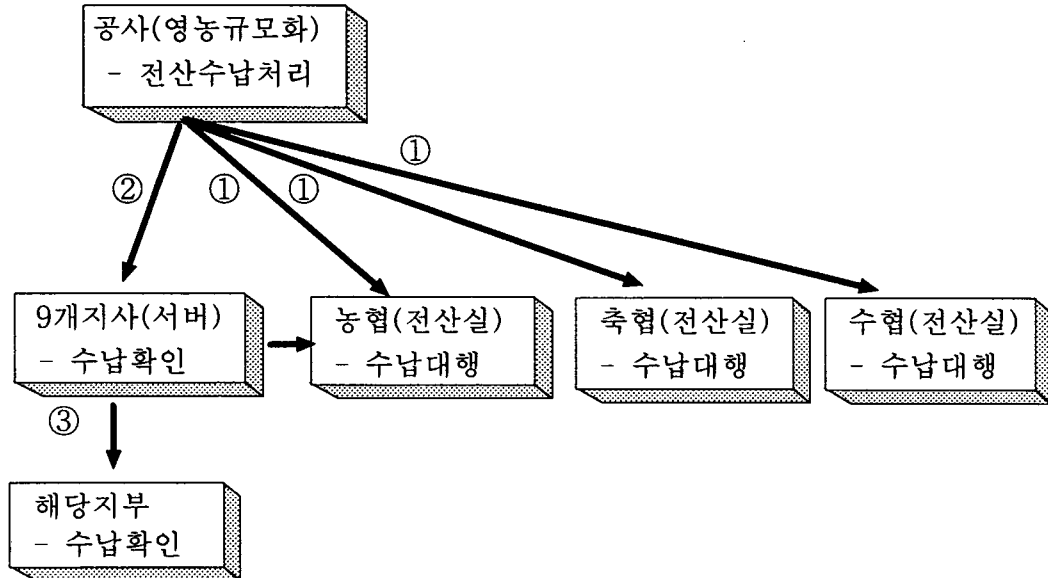
□ 영농규모화사업 통합 데이터베이스



-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농지교환분합사업, 경영이양보조금 - 인적, 농지, 신청, 계약, 채권, 사후관리, 경영진단

□ CMS(Cash Management System) 도입

- 전산 수납처리(농·수·축협 전산실)⇒농기공(영농규모화사업처)
- 본사 총괄 수납 DB구축



① CMS수납 및 Data 전송

- 농·수·축협(회원조합포함) 수납
 - CMS입금분 수납당일 본사 모점으로 입금됨
- 수납Data 전송 : 수납익일 공사(영농규모화사업처)에 전송

② 전산수납처리 : 분산 Client/Sever 환경에 의한 수납처리

③ 수납확인 : 수납익일에 수납여부 확인함

□ 시스템의 특성

- 분산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시스템 환경
 - 9개 지사와 P/R로 연결
- 사용자중심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 구현
 - Windows 95/98환경으로 사용자중심으로 구성
- 4세대 개발언어(PowerBuilder)에 의한 시스템 개발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RDBMS)에 의한 정보관리

□ 시스템 환경

구분	상세내역	비고
H/W -서버	본사 : HP/V9000/V2500 지사 : IBM Rs6000	
N/W	P/R(2048×2kbps)	본사↔지사↔지부
O/S	본사 : HP/UX11.0 지사 : IBM Aix 4.1.3	
RDBMS	ORACLE 7.3.2	
개발언어	PowerBuilder	

□ 기대 효과

○ 영농규모화사업 통합 자료관리	·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농지교환분합사업 통합관리로 자료관리 효율화
○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처리 표준화	· 업무처리 표준화로 각 시·군지부 입·출력 통일 및 자료공유
○ 정보공유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 본사·지사·지부 On-Line화로 Real Time(실시간) 자료 공유
○ On-Line화로 수납업무 CMS 처리	· 수납은행(농·축·수협)과 CMS(Cash Management System) 수납 · 전송 데이터에 의한 FIMS 전산 수납처리

사. 기금위탁관리조직 운영의 Slim화

□ 추진배경

- 외부의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
- IMF등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공공기금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통한 국가경제 재건에 동참

□ 추진내용

- 연도별 인력운영 현황('95 ~ '99)

(단위 : 명)

연도별	계	1급	2급	3급	4·5급	보조
'95	17	1	1	4	7	4
'96	16	1	1	3	8	3
'97	16	1	1	3	8	3
'98	14	1	1	2	8	2
'99	12	1	1	3	6	1

※ '99년말 현재 '95년 대비 29% 감축운영

- 연도별 기금위탁관리비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95	'96	'97	'98	'99
계	568	719	879	808	713
○ 인건비	274	286	350	310	314
○ 경비	149	150	165	152	128
○ 보상금등	145	283	364	346	271

□ 추진효과

- '98년도부터 조직 슬림화로 획기적 비용 절감
 - ('98) 71백만원, ('99) 97백만원 절감
- 위탁관리조직 Slim화 효과 기금사업 전반에 파급

3. 누적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소방안의 적정성

가. 농지관리계정 연도별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94	'95	'96	'97	'98	'99
○ 수익	51,277	55,802	58,676	64,779	70,502	61,177
○ 비용	119,892	141,002	154,926	180,687	226,029	228,984
○ 당기순이익	△68,615	△85,200	△96,250	△115,908	△155,527	△167,807
○ 손익누계	△192,792	△277,992	△374,242	△490,150	△645,677	△813,484

나. 농지관리계정 적자요인

- '94년 이후 정부출연금의 중단되어 규모화사업의 재원을 고금리(5~14%)의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농업인에게 저금리(0~4.5%)로 지원함으로써 차입금 금리와 대여금 금리간에 격차(5~11%)가 발생하여 매년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 기금적자 계속 누증
- 주요 조달 및 운용금리 비교표

조달금리	운용금리
○ 국채관리기금 : 6.48%~18.41%	○ 농지매매사업 : 3.0%~4.5%
○ 재 특 : 5.0% ~ 9.5%	○ 농지임대차사업 : 0%
○ 농지채권 : 11.17%~12.86%	○ 교환분합사업 : 3.0%~4.5%
	○ 농지구입사업 : 3.0%

다. 농지관리계정 적자해소 노력

- 관리계정의 유일한 조성재원인 일반회계 출연금 확보노력
 - 이자 지출이 없는 정부출연금 지원 확대 건의
 - '94년이후 조성재원의 금리차손 이상 일반회계출연 지속적 요구
 - '98년 2,000억원 요구 → 1,000억원 확보
(IMF정부예산 축소요구로 200억원 삭감)
 - '94년 이후 일반회계 농지관리기금지원 현황

(단위 : 억원)

'93까지	'94	'95	'96	'97	'98	'99	소계	2000(P)
10,444	-	-	-	-	800	400	11,644	400

- 영농규모화사업 사업추진 방식 개선('99부터)
 - 농지매매사업 이자율 상향조정 : 3% → 4.5%(1.5% 인상)
 - 저비용 고효율의 임대차사업으로 전환
 - 농지매매 3 : 농지임대차 7 ⇒ 농지매매 2 : 농지임대차 8
- 농업인 자부담 제도 도입으로 예산절감
 - 단가/평 3만원까지 매매금액의 10%
 - 단가/평 3만원 초과시 초과분 전액 자부담

라. 기대효과

- 차입금 이자지출액 감소로 결손액 감소(예 : 연800억원×13%=104 억원)
- 기금건실화 기여 및 지속적인 정부출연금의 지원토대 마련
- 사업방식의 전환으로 농지규모화사업의 장기활성화 추진도모